

건축사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건축사회관 우편번호 : 137-87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gods@krra.or.kr
http://www.krra.or.kr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63 / November / 2007

0711

칼럼

불편한 진실

시론

디자인 도시 서울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이응노 미술관

완도군 수협 활어종합유통센터

여의도 태양빌딩

팍스타워

회원작품

열대의꿈

평창동 주택

퍼즐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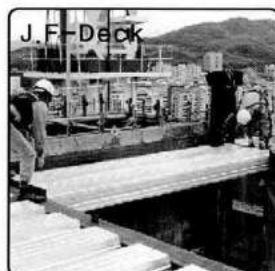
현상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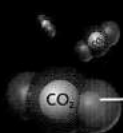
동래구 장애인복지회관

연재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서 취득
(제 2005-153호)
- 산자부기표원 EM MARK 취득
(2005-046호)
- 대한건축학회인증
- 한국구조기술사회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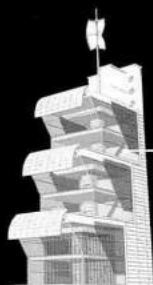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무려 60%가
건축 환경에서 나온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된 탄소는 하늘을 공해로
덮고 지구 온난화를 촉진합니다.



BIM 구현을 위해 개발된
Revit®으로 에너지 소비량과 폐기물
등 건축물의 영향을 사전에 파악,
에너지 소비량과 폐기물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모델 작업을 통해
사용자들은 설계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제 건축
작업에 앞서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utodesk.co.kr/revit을
참조하십시오.

**BIM(빌딩 정보 모델링)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십시오.**



더 삶에서의 일상보다 아름다운 명작은 없습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명작처럼 일상의 매순간이 영원히 기억되는 집이 있습니다.
내 가족을 더 소중히 사랑할 수 있고, 나의 삶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곳—
나는 더 삶에 삽니다.

정신을 살크래프트 the 



세 · 계 · 최 · 초 · 독 · 자 · 모 · 델 · 로 · 대 · 한 · 민 · 국 · 을 · 대 · 표 · 하 · 는 · 주 · 차 · 기 · 가 · 되 · 겠 · 습 · 니 · 다 .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실용신안등록 제20-032955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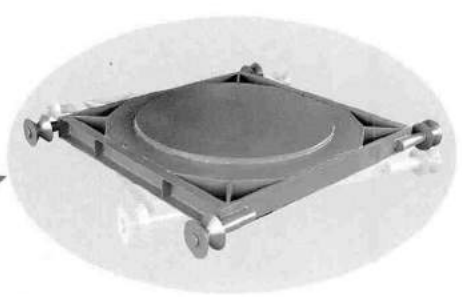
6年이 걸렸습니다.
턴테이블 내장형
개발완료!
시판개시!



"2006 한국건축산업대전 참가전시광경"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적 특허방식인
유압리프팅 구동방식의 新메커니즘



자매 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이렇게 다릅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 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 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 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주차"를 입력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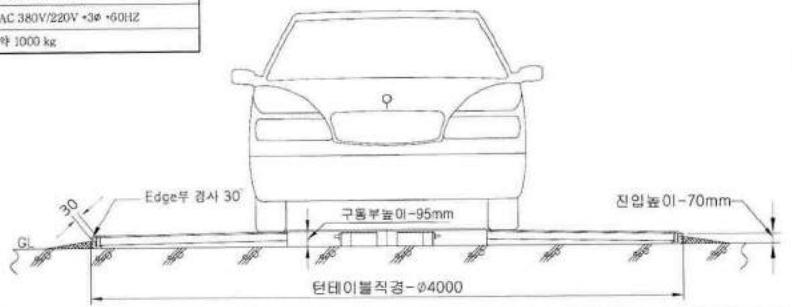
■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最小)	주차기 길이(最小)	소요높이(最小)
SKY PARK-5	5 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 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 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 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 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 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 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 대	4570	6090	13060

▼ 자매품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0mm!

명 칭		상광턴테이블(신형)
수 용 차 량		중,소형 승용차(무게 2000kg 이하)
구 동 방 식	구동방식	마찰 구동식
	구동모터	0.15 KW x 4P = 3기
	정격속도	약 1 RPM
조 작 방 법		PUSH BUTTON
인 입 전 원		AC 380V/220V · 3φ · 60HZ
자 체 중 량		약 1000 kg

실용신안등록 제20-0233726호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株)창공駐車産業
www.Juchagi.com
한글도매인 : 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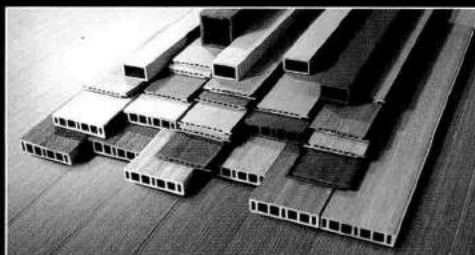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전국 대표전화 1544-3335
(상담, A/S)
■ E-mail : cgp210@kornet.net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번지 1층 A/S : 02)323-4448
■ 부산사무소 : 051)303-2296
■ FAX : 054)973-0067
■ 광주연락소 : 062)942-6923



“그림같은 공간을 꿈꾸세요”

공간에 대한 긴:생각 Z:In 사이데온

사이데온은 다양한 컬러와 간편한 시공으로 모던한 분위기에서 클래식한 분위기까지 차별화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사이데온은 특수코팅된 고급 목분을 사용하여 나무의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 신소재입니다.
 ▶내수성이 뛰어나고 곰팡이,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탈색과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열폭이 지지 않습니다.
 ▶Fashion 자재입니다. ▶시공이 간편합니다. ▶유지보수가 쉽습니다.

[시공사례]



▲ DECK



▲ SIDING



▲ LOUVER



▲ TERRACE



▲ BALCONY



▲ FENCE



“좋은 주차기를 선택하는 기준”

- ✓ 조작이 쉬운가?
- ✓ 잔고장이 없는가?
- ✓ 소음없이 조용한가?
- ✓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가?
- ✓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동양PC의 SMART PARKING은
유럽안전규격인 CE마크를
획득한 제품으로 유럽 등지에
수출하는 주차기입니다.

한 층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같은 높이에 한 층 더, 현대제철 슬림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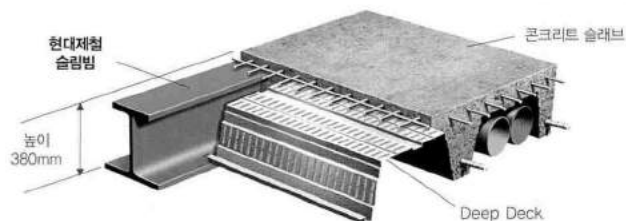
건물 높이 제한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층고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층고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로어 솔루션인 슬림플로어 공법, 현대제철이 함께 합니다.

현대제철 '슬림빔'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압연 비대칭 H형강으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썩~ 줄이고, 임대면적과 수익률은 확~ 늘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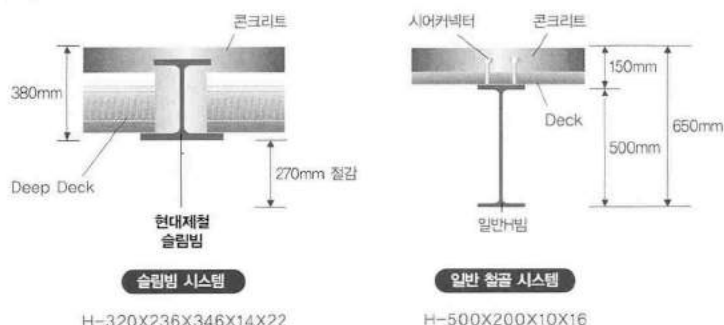


슬림플로어 공법



슬림플로어 공법은 좁은 높이의 데크플레이트를 슬림빔의 하부플랜지 위에 위치시켜 작은 철골보를 생략함과 동시에 층고를 줄이는 층고절감공법입니다. 현대제철 '슬림빔'은 하부플랜지가 상부플랜지보다 긴 압연 비대칭 H형강으로 국내 최초로 현대제철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건물 바닥 구조시스템 비교



현대제철 슬림빔 - 이것이 다르다



More Floors

- 한 층당 20cm에서 최대 40cm 까지 층고 절감 가능
- 분양면적, 임대면적 증가로 사업성 향상



Cost Down

- 작은 보 생략으로 철골량 30% 감소
- 층고 절감으로 내외장재 비용 5~10% 절감
- 철골보의 하부플랜지만 내화피복 필요, 70% 비용절감



Fast Construction

- 철골량 감소 및 임중 수 감소로 제작 설치 기간 30% 단축
- 지하층에 적용시 토공사량 감소

국내 적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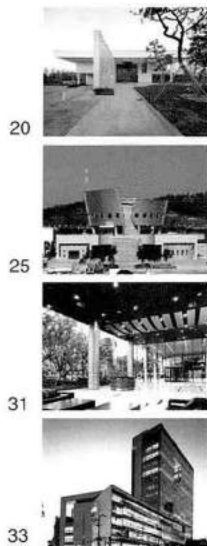
오피스
삼성화재 청량리 사옥



지하주차장
죽전민자역사 신세계백화점



지상 자주시 주차건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차례 2007 11 463호

Contents

칼럼	불편한 진실	백민석	12
서론	디자인 도시 서울	이옥화	14
건축만평		유원재	17
2007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이응노 미술관	김정철	18
	완도군 수협 칠어종합유통센터	박홍근	24
	여의도 태영빌딩	변 용	26
	팍스타워	윤토현	32
회원작품	열대의꿈	만규임	34
	평창동 주택	이관직	40
	퍼즐 하우스	박준영	46
현상설계	동래구 장애인복지회관		52
연재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천환중	59
건축기행	미국 뉴욕 건축기행(3)	민윤기	63
건축마당	협회소식		72
	건축계소식		77
	건축사시험 합격자 공고		79
	법령		84
	통계		94
	해외집지동향		97
	백민석 책을 말한다		100

발행인 한명수
 편집위원 조원용(편집국장), 만규임, 김형수
 취재·편집 최영창 팀장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건축사회관
 우편번호 137-877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ra.or.kr
 인쇄 (주)현대문화사 Tel: 02)2278-4462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35



44



50

Korean Architects

Vol. 463

November 2007

Column

An Inconvenient Truth	Baek, Min-seok	12
-----------------------	----------------	----

Focus

Design City, Seoul	Lee, Ok-hwa	14
--------------------	-------------	----

Cartoon

	Yoo, Won-jai	17
--	--------------	----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07

Lee Eung No Museum		18
WanDo F.C. Fresh Fish Distribution Center		24
Yeoido Building Taeyoung Co. Ltd		26
Pax Tower		32

Works

Tropical Dream	Q.M. Min	34
Quadrangle	Lee, Kwan-jick	40
PUZZLE HAUS	Park, Jun-young	46

Competition

Dongnae-gu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52
--	--	----

Serial

Innovative Paradigm for Quality Improvement of Architectural Design		
	Jun, Han-jong	59

ARCHITECTURE TRAVEL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New York(3)	Min, Yoon-ki	63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72
Archi-Net		77
Law&Ordinances		84
Statistics		94
Overseas Journal		97
Book Review		100

Publisher Han, Myung-soo
 Assistant Editor Cho, Won-yong & Min, Gyu-am & Kim, Hyung-soo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581-5711~4
 Fax (02)596-8823

불편한 진실

An Inconvenient Truth

“지구의 6번째 생물 대멸종이 시작됐다.”

2007년 10월 25일(현지시각) 발표된 유엔환경계획(UNEP)의 '제4차 지구환경전망(GEO-4)' 보고서는 향후 세계 각국이 환경을 핵심 정책으로 끌어 올리지 않을 경우, 인류는 심대한 재앙을 자초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생명의 대멸종'이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최후의 통첩'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GEO-4는 세계 환경전문가 390명과 자문단 1,000여명이 지난 20년간 현장 관찰과 통계를 중심으로 작성한 방대하고 상세한 자료로써 지구환경과 관련된 종합보고서이다. 이에 따르면 대기오염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이로 인해 매년 200만 명이 사망할 것이고 또, 양서류의 30%, 포유류의 23%, 조류의 12%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서식지 파괴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어, 이렇게 생물이 살기 힘들면 그 재앙은 곧 인류를 덮친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경보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50년 내 인류의 건강과 식량문제도 심각한 국면에 처할 것이라고 한다. 금세기 안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1.8도 상승한다는 예측도 들어 있다. 지구는 실로 온난화와 대기오염, 식량·식수 부족, 생태계 파괴 등 총체적 환경 위기에 처해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앨런 와이즈먼은 저서 '인간 없는 세상(The World Without Us)'을 통해 지구상의 인류가 몽땅 사라진다는 가정에서 자연의 신비스러운 복원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사라지면 인간이 만든 인공구조물들도 사라지게 되는 데, 그의 계산법에 따르면 300년이 지나면 댐들이 무너져 강 유역에 세워진 도시들이 물에 씻겨 나가고, 3만5,000년 후엔 토양에서 납 성분이 전부 사라지며 10만년 후에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인류 이전의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직 부통령 엘 고어가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1천 회가 넘는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을 가진 것에서 촉발되어 제작된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은 풍요와 안락한 삶에 대한 인류의 욕망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증가일로에 있고 이런 소비 행태가 부추긴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극지의 빙하를 10년을 주기로 9%씩 녹여내고 있다는 점과 이런 추세가 중단 없이 진행된다면 지구상에 있는 대도시의 40% 이상이 물에 잠기게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우리는 문명의 발전을 계속 이루어 오며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닥쳐오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 암묵하고

대기오염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이로 인해 매년 200만 명이 사망,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50년 내 인류의 건강과 식량문제도 심각한 국면에 처할 것.
 월드워치연구소는 도시가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이지만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인류의 절반 이상이 살게 되는 도시는 머지 않아 '희망의 공간'이 될 것이라 전망.
 '지속가능한 건축(Sustainable Architecture)'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환경부하의 저감, 건축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조속히 정비,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건축사조직의 대표단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

있다. 책에도 명시되어있지만, 암묵하는 이유는 두가지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생활방식을 바꿔야 하는 귀찮음과 불편함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지금껏 경제발전을 위해 계획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진실을 알아갈수록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불편을 참고서라도 알아둬야 한다. 환경문제는 양심의 문제이며 윤리의 문제이다.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결심하고 행동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며 이제는 행동(action)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민간 환경단체인 '월드워치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도시의 미래'라는 발간물에서 도시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면서 동시에 해법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전환은 비록 도시가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이지만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인류의 절반 이상이 살게 되는 도시는 머지 않아 '희망의 공간'이 될 것이라는 발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발상 역시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질 때만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환경재단의 '2007년 지구환경보고서'가 제시하는 성공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도시 주체들이 도시와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며 실천했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지구 환경 위기의 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의 구체적인 행동강령이자 실천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월 말 서울에서 열린 세계 지식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위리여 소타마 헬싱키예술디자인대학교(UIAH)' 총장은 디자이너의 역할론에 대해 "지구의 운명은 디자이너의 손에 달렸다"는 화두를 던지면서 기업과 디자이너들은 책임감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환경, 소외, 가난과 같은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운영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규칙으로 승격되었고, 몇몇 대학교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BK21사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 건축기술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건축학회에서는 '친환경 건축설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시가 조성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건축사는 물론 대한건축사협회도 환경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지속가능한 건축(Sustainable Architecture)'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환경부하의 저감, 건축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조속히 정비,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건축사조직의 대표단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디자인 도시_서울

Design City_Seoul

focus

지난 10월 20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CSID 총회 폐막식에서 서울이 '2010년 세계디자인 수도' 로 지정됐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공공디자인이라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도시 디자인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 든든한 격려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미래는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라고 항상 부르짖어오던 필자로서는 사실 서울이 디자인수도로써 탈바꿈 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가 상상하는 '디자인 도시' 가 빨리 다가오길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상상해온 디자인 도시란 어떤 것일까?

디자인 자문을 위해 ○○ 구청의 구석구석을 다니다보면 새삼 아직도 서울에 이런 곳이 있구나하고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나마 선두적으로 앞서가는 ○○구청 덕분에 현장을 둘러보고 자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만든다.

사실 디자인이란 명목아래 조금이라도 나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몇몇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애쓰는 모습은 실로 필사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언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정리되지 않은 주변을 정리해가며, 정리될 것을 예상해가며 참으로 어려운 작업임을 느낀다. 그 건물의 디자인만 볼 수도 없고 또한 주변과의 조화 때문에 건축사의 독창성과 창작성을 또한 무시할 수도 없다.

하물며 이 커다란(?) 서울을 앞으로 디자인도시로 정리함에 있어 서울시는 많은 굴곡이 있을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정책도 있고, 많은 계획도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과연 우리가 꿈꾸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끊이질 않는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요코하마시는 1988년 요코하마 디자인 도시선언과 30년 간의 도시디자인 활동을 인정받아 2005년 일본 굿디자인상 금상을 수상한 도시이다. 이 도시의 성공의 관건은 건물, 간판, 다리, 도로 등 공공디자인적인 요소

리처드 글러먼은 “디자인도시의 조건은 인프라, 도시계획, 디자인 등 세 가지로 본다.
서울이 디자인 수도로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디자인보다는
인프라, 도시 계획이 더 중요하다. 도시가 경제·사회적으로 건강하면,
좋은 디자인의 빌딩은 결국 보너스 같은 것이다.”라고 디자인 도시의 조건에 대해 말했다.
이제는 서울도 한단계 뛰어 넘어 예술적 감성이 자극되고 창조적 에너지가 충만할 수 있는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들이 조화롭게 서로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라 한다. 물론 요코하마시의 도시 디자인을 담당해오고 있는 쿠니요시 나오유키 도시개발부
서 디자인실장이 계속적으로 담당해온 것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요코하마시의 시장이 네 차례나 바뀌는 동안
쿠니요시 실장이 계속 도시 디자인을 담당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의 일관성있는 정책, 디자인의 조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다면 성공적인 디자인 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골
목길을 걷다가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마치 여기가 한모퉁이의 전시관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또 다시금 되물어본다.

며칠전 한국에 방문한 피카소(스페인 말라가)·앤디워홀(피츠버그)·구겐하임(베를린) 미술관 등을 설계한 건축사 리처드 글러먼
(60)에게 한 기자가 디자인 도시의 조건에 대해 물어보았다

“디자인 도시의 조건은 인프라, 도시계획, 디자인 등 세 가지로 본다. 서울이 디자인 수도로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디자인보
다는 인프라, 도시 계획이 더 중요하다. 도시가 경제·사회적으로 건강하면, 좋은 디자인의 빌딩은 결국 보너스 같은 것이다.”

좋은 디자인의 건축이란 우리(도시)에게 보너스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일까...

지금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도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전체를 새롭게 바꾸려 공을 들이고 있다. 이제는 서울도 한단
계 뛰어 넘어 예술적 감성이 자극되고 창조적 에너지가 충만할 수 있는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리처드 글러먼의 말을 읽으며 디자인이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해 보며 자신도 모르게 견고 싶은 도시... 따뜻한 도시... 그런 ‘디자인 도시_서울’을 꿈꿔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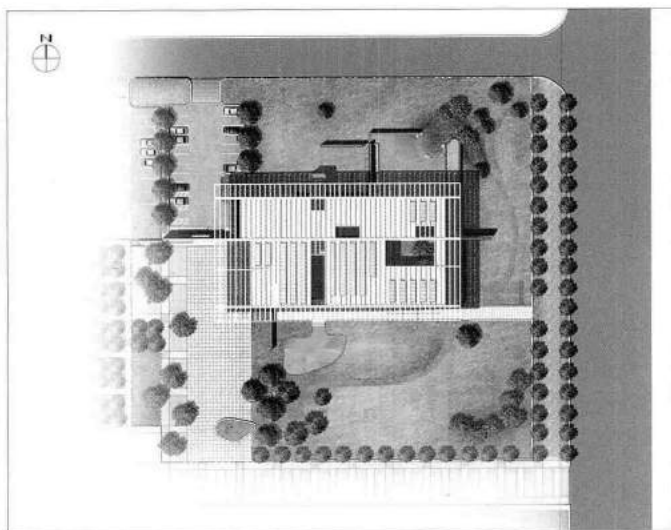
이응노 미술관

Lee Eung No Museum

설계자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정철
 시공자 계룡건설산업(주)
 건축주 대전광역시청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96번지(둔산공원 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648,715.6㎡
 건축면적 1,139.87㎡
 연면적 1,703.20㎡
 건폐율 0.18%
 용적률 0.20%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백색노출콘크리트, THK24투명복층유리
 발주자 대전광역시
 설계담당 백문기, 이병호, 김도한, 권현주, 조정연, 서현정, 김승훈



Location 396, Mannyeon-dong, Seo-gu, Daejeon, Korea
 Site area 648,715.6㎡
 Bldg. area 1,139.87㎡
 Gross floor area 1,703.20㎡
 Bldg. coverage ratio 0.18%
 Gross floor ratio 0.20%
 Structure R/C
 Bldg. Scale B1, F2

계룡건설산업(주)과 (주)정림건축 건축사사무소, 프랑스 건축사 로항 보두앵 컨소시움이 대전광역시 의 이용노 미술관 건립공사(터키)경쟁에서 당선되었다.

고암 이용노(1904~1989) 예술세계의 상징성을 건축적으로 재해석하여 단순한 조형미로 표현한 이번 프로젝트는 미술관의 또 다른 유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문자의 해체와 더불어 그것의 조합, 그리고 반복되는 평면적 전개는 글자의 획들이 드로잉적인 요소에서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단순한 상징을 시도하고 있다. 이 상징의 의식세계는 전통으로부터의 발견임은 물론이며, 고암이라는 ‘조형적 구조(structure)’를 통하여 새롭게 탄생되고 있는 것이다.”

—〈고암 이용노, 삶과예술〉중에서—

Concept 1 '상징'

이용노 선생의 작품속에 내재된 '조형적 구조'를 통해 고암의 예술

세계를 상징화한다.

드로잉적인 요소에서 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한 '문자추상' 시기의 작품을 건축적으로 재해석하여 상징화한다.

Concept 2 '담, 마당'

전통건축 공간요소인 담, 마당의 개념을 재해석하여 전시공간과 연계된 다양한 외부공간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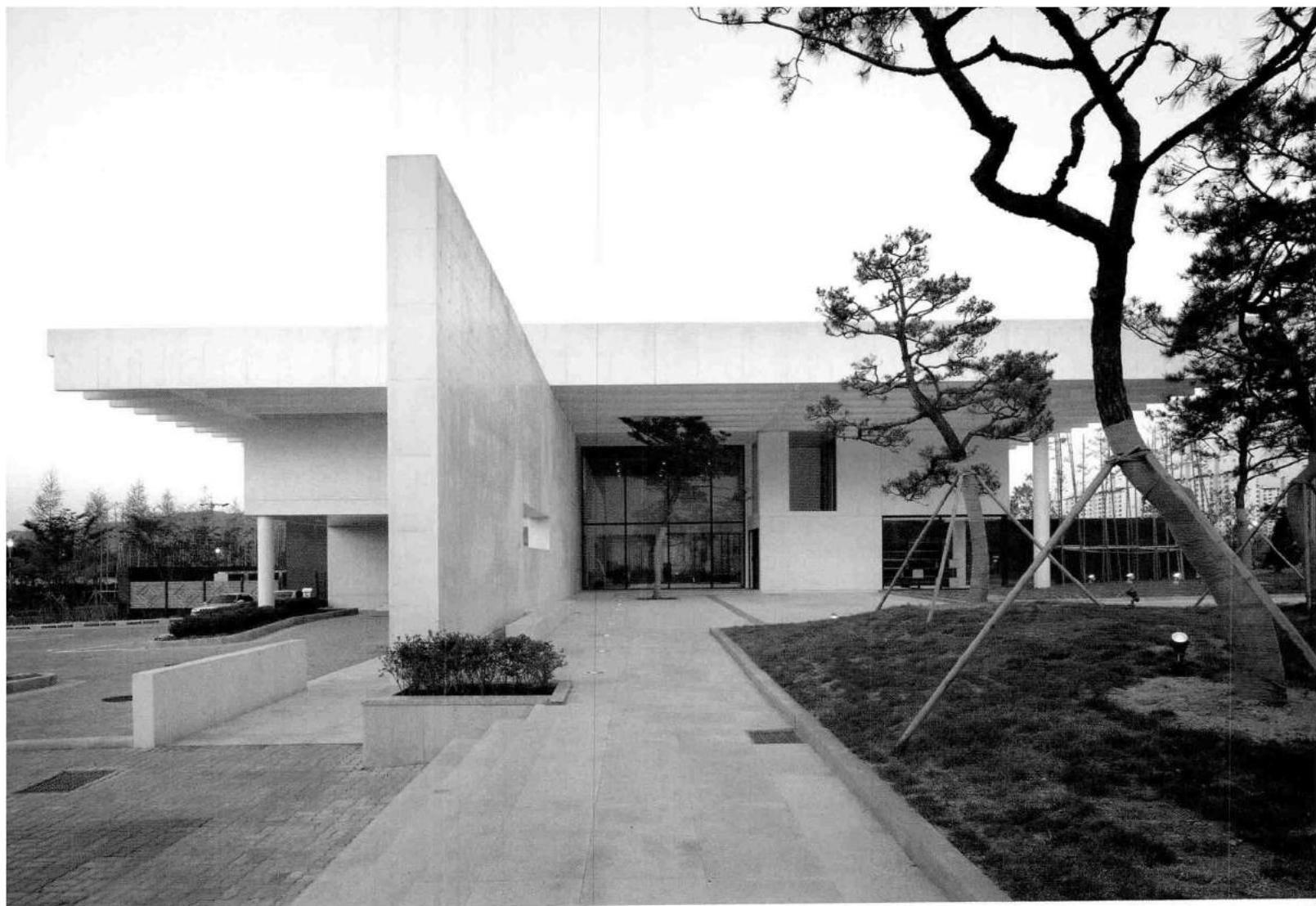
Concept 3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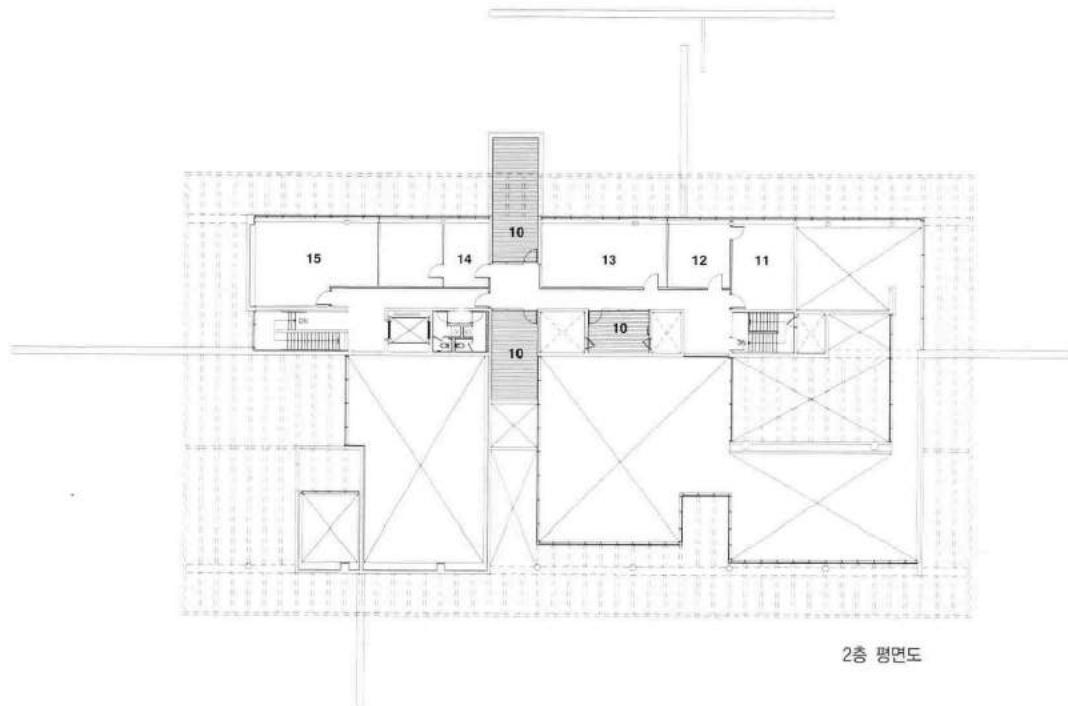
내, 외부공간의 다양한 연계는 산책개념을 통한 전시관람으로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킨다.

Concept 4 '자연'

공원의 자연환경을 담아내는 공간설정으로 원래의 공원부지에 대한 장소성을 배가시킨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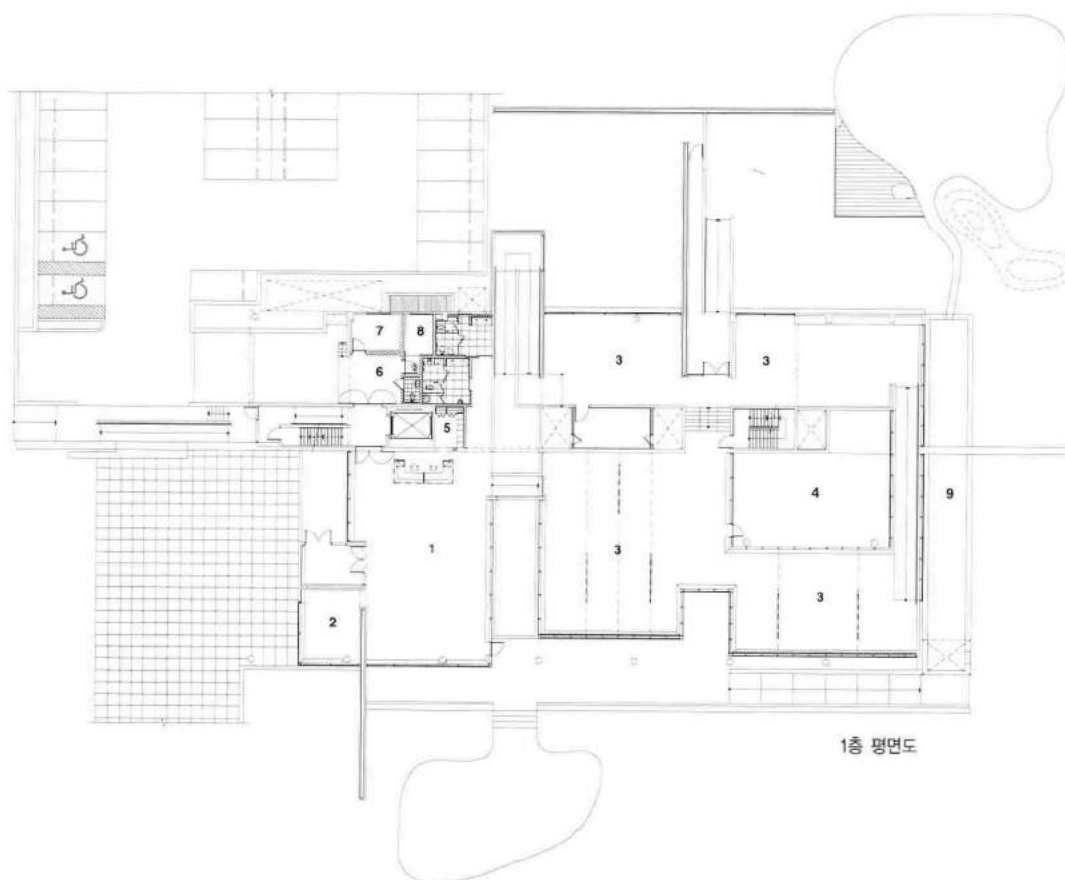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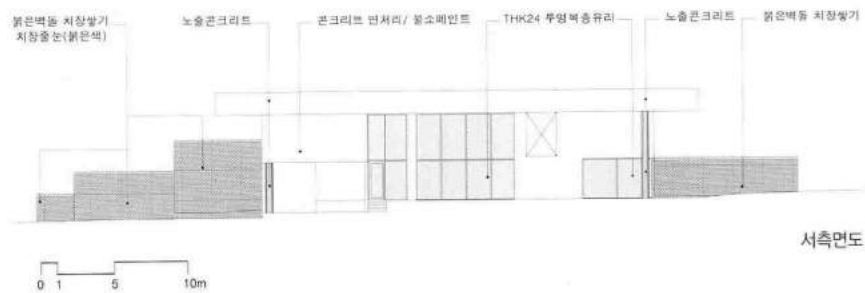
- 01. 출입 및 카페테리아
- 02. 휴게실
- 03. 전시실
- 04. 중정
- 05. 휴대품보관소
- 06. 하역데크
- 07. MDF실
- 08. 숙직실
- 09. 수공간
- 10. 외부데크
- 11. 회의실
- 12. 강의실
- 13. 세미나실
- 14. 영상관장실
- 15. 도서자료 및 정보검색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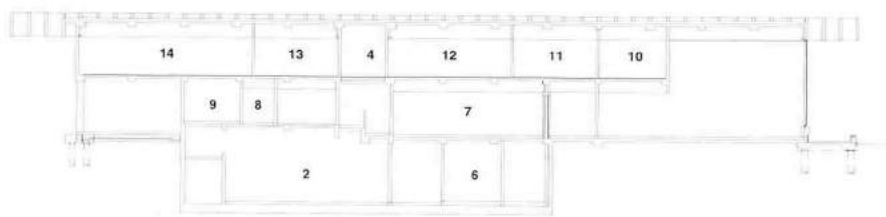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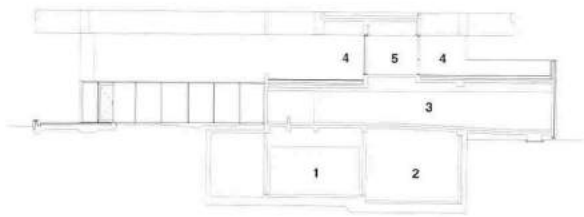
0 1 5 10m





단면도 1

- 01. 작품해포장실
- 02. 기계실
- 03. 램프1
- 04. 테라스
- 05. 홀
- 06. 전기실
- 07. 전시실
- 08. 숙직실
- 09. MDF실
- 10. 회의실
- 11. 관장실
- 12. 사무실
- 13. 명예관장실
- 14. 도서관 및 정보검색실



단면도 2



회원작품 |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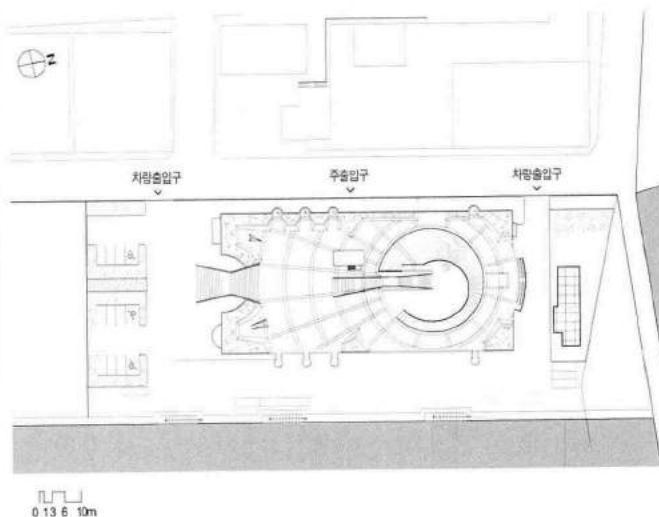
완도군 수협 활어종합유통센터 WanDo F.C. Fresh Fish Distribution Center

건축사지 2007년 4월호 게재

설계자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 박홍근
시공자 학림건설(주)
건축주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

● 배치도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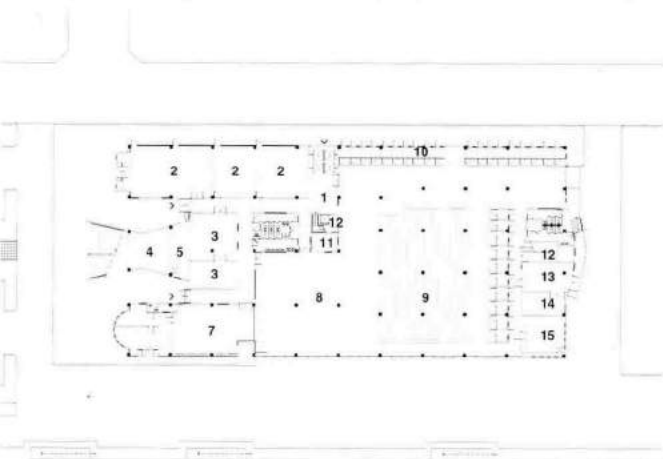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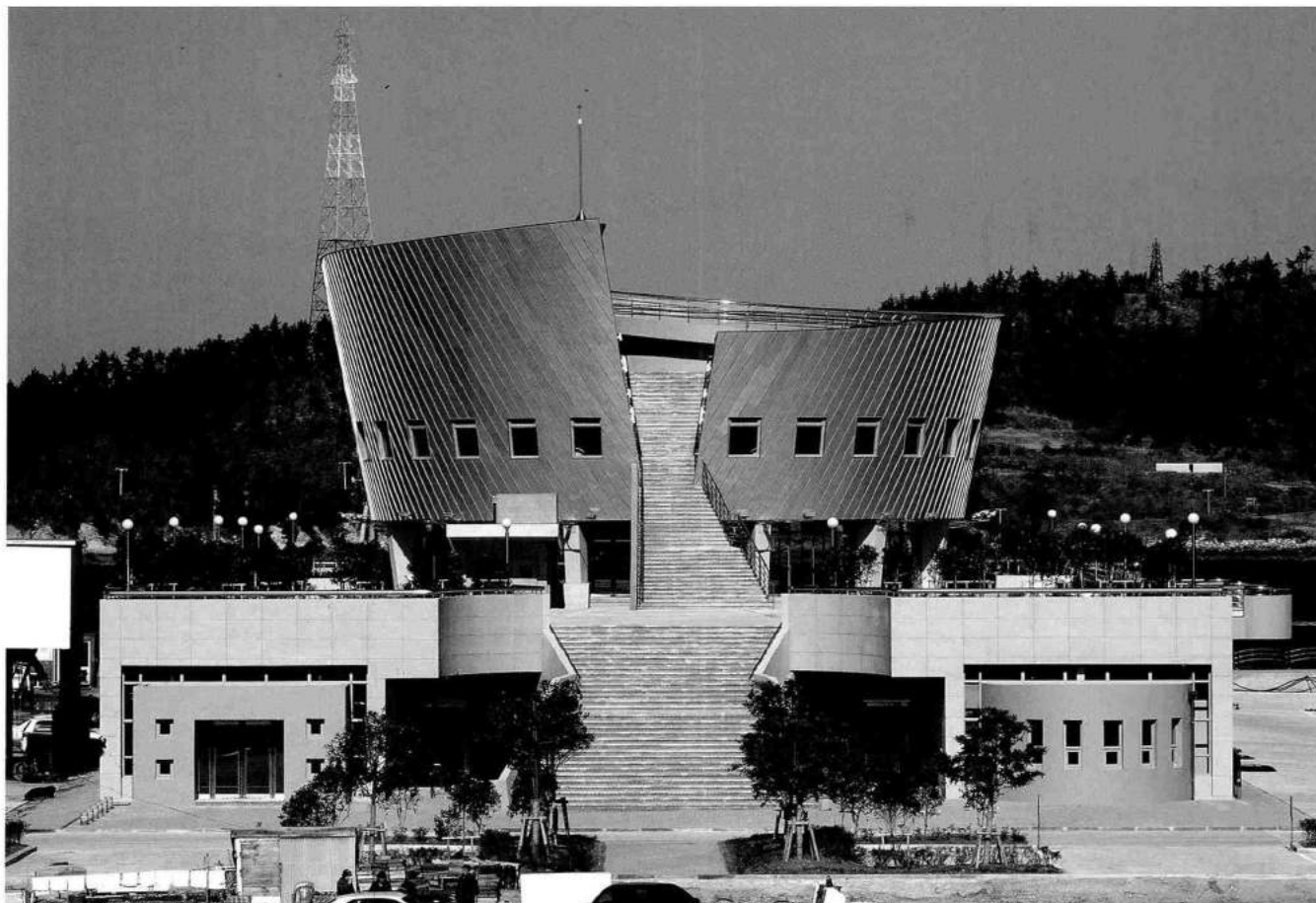


대지위치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100-1번지
지역지구 준 공업지역
주요용도 판매시설(항만시설)
대지면적 7,177.00㎡
건축면적 2,684.49㎡
연 면 적 3,472.03㎡
건 폐 율 37.40%
용 적 률 48.38%
규 모 활어종합유통센터 : 3층 + 폐수처리시설 : 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내부마감 수성페인트, 에폭시코팅
외부마감 T0.7 REHEIN ZINC합금판, 본타일
구조설계 국제구조
설비설계 새터 ENG
전기설계 줄은 ENG
설계담당 황인광, 이세영, 박경숙, 허정

1. 동측 전경
2. 남북 전경
3. 전망대에서 본 완도항
4.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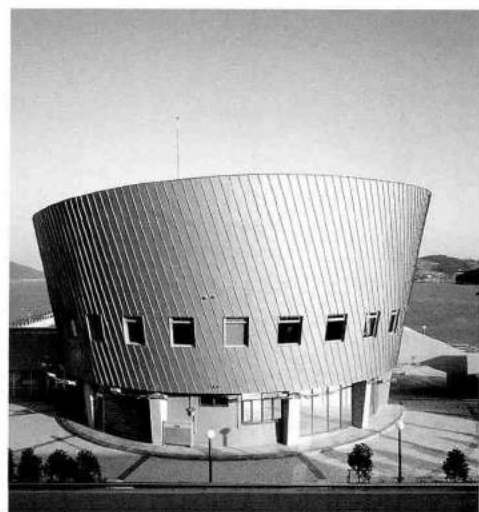


Location 1100-1, Gayong-ri, Wando-eup, Wando-gun, Jeollanam-do, Korea
Site area 7,177.00㎡
Bldg area 2,684.49㎡
Gross floor area 3,472.03㎡
Bldg coverage ratio 37.40%
Gross floor ratio 48.38%
Structure R,C + S,C
Bldg. Scale F3



1층 평면도

- 01. 출 및 복도
- 02. 소매점
- 03. 저장고
- 04. 저수조
- 05. 펌프실
- 06. 파출소
- 07. 판매과사무실
- 08. 선어공판장
- 09. 활어공판장
- 10. 저수조 및 사무실
- 11. 강의실
- 12. 창고
- 13. 전기실
- 14. 발전기실
- 15. 해수유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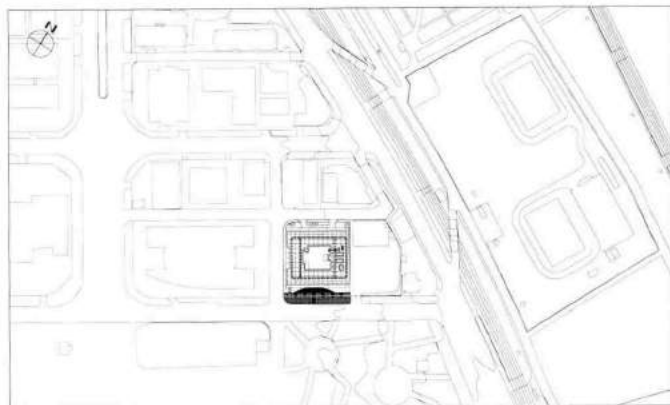
회원작품 | Works

여의도 태영빌딩

Yeoido Building Taeyoung Co. Ltd

설계자 (주)원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 변 용
시공자 (주)태영건설
건축주 (주)태영건설

● 배치도



0 10 50 100m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대지면적	3,805㎡
건축면적	2,273.27㎡
연면적	41,858.8㎡
조경면적	589.69㎡
건폐율	59.74%
용적률	712.55 %
규모	지하 5층, 지상 1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지하), 철골조(지상)
내부마감	24mm 컬러복층유리 커튼월+10mm알미늄 허니컴 패널
외부마감	steel wall cladding
구조	(주)서울구조
설비	(주)정도설비
전기	(주)협인
인테리어	(주)중앙디자인
조경	(주)비오이엔씨
설계담당	이기정, 김진모, 조현휘, 강주성, 이규호, 김인성, 이제승, 김현아, 박진, 김학기, 정승현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_박영채)



Location	10-2, Yeo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
Site area	3,805㎡
Bldg area	2,273.27㎡
Gross floor area	41,858.8㎡
Bldg coverage ratio	59.74%
Gross floor ratio	712.55%
Structure	R,C+S,C
Bldg. Scale	B5, F13



1. 원경 2. 전경

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비어있음에 그릇의 쓸모가 있다.” - 道德經(老子)

일상을 담는다. 햇살을 담는다. 바람을 담는다. 비를 담는다. 별을 담는다.

그리고...우주를 담는다.

대 지

프로젝트의 대지는 여의도 공원 북서측 초입에 위치한다. 최고 고도제한지구인 대지의 주변은 각각의 개성이 반영된 일련의 건축물들이 같은 높이로 도열해 있다. 우리의 작업은 도시 입면의 일부이기도 한 이곳이 69,000여 평의 공원과 어떠한 연계를 가지며 인근의 건물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의 과제를 푸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Mass

670평의 작지 않은 평면을 ‘ㄷ’자로 계획하여, 건물 각 지점에서 특별한 시각적 체험이 되도록 하였다. 인접건물에 의하여 전망이 차단되는 부분에 집중형 주 코어를 배치하고, 평면형에 따라 결정된 중정에 전망 엘리베이터와 투명한 계단을 두어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구성

1층 주출입구는 피로티를 통해 외부공간이 자연스럽게 지하 공간의 300석 콘서트홀과 편의시설로 연결되도록 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이용자와 근린에 문화 기능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지상의 업무공간은 상층부 4개 층을 전용 업무공간으로 하며, 그 아래 9개 층은 임대 업무공간으로 하고, 내·외부공간은 나무와 풀꽃 등의 조경요소를 활용하여 공원과의 시각적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기준층의 사무실 깊이는 12m로 하고 그 양단을 커튼월로 하여 채광 및 환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입면은 직선요소와 각도가 다른 면을 활용함으로써 강직성 속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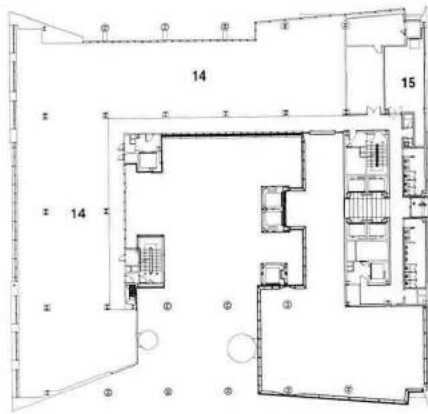
시공·설비

Top-Down 공법과 슬러리 월을 채택하여 저소음·공기단축의 효과를 얻었으며, 외표면증가에 따른 공조부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사조절 장치를 적소에 배치하였다.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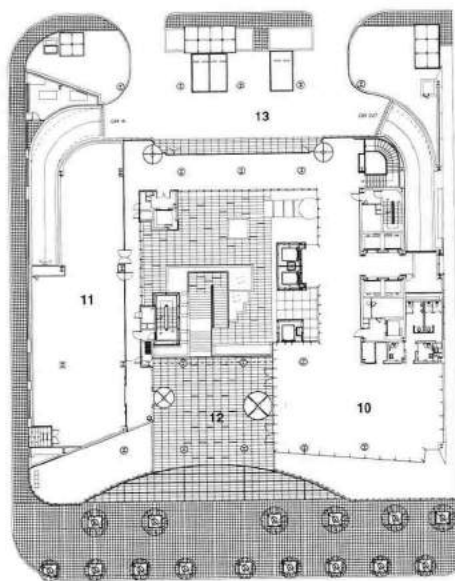
밝고 투명하며 활력이 넘치는 공간의 자락에서 ‘우리는’ 희망을 꿈꾼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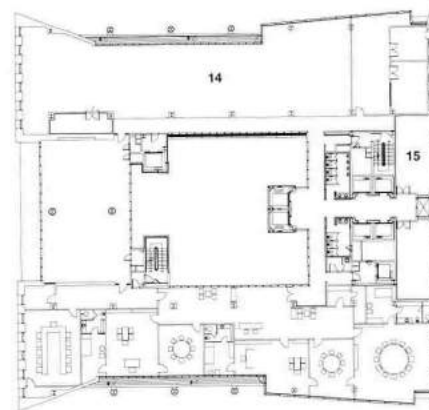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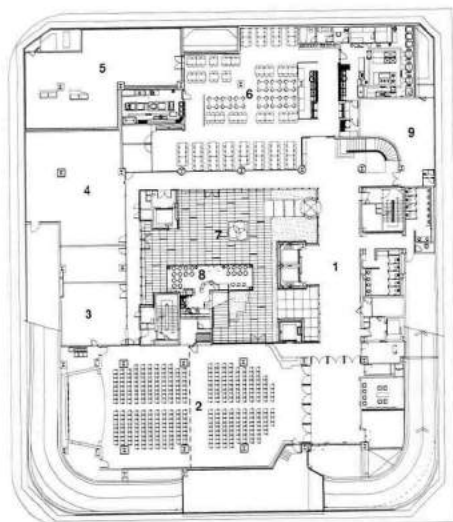
- 01. 홀
- 02. 콘서트홀(300석)
- 03. 연습실
- 04. 전문식당
- 05. 공조실
- 06. 직원식당(250석)
- 07. 중정
- 08. 카페
- 09. 방재센터
- 10. 로비
- 11. 은행
- 12. 주출입구 필로티
- 13. 부출입구 필로티
- 14. 사무실
- 15. 공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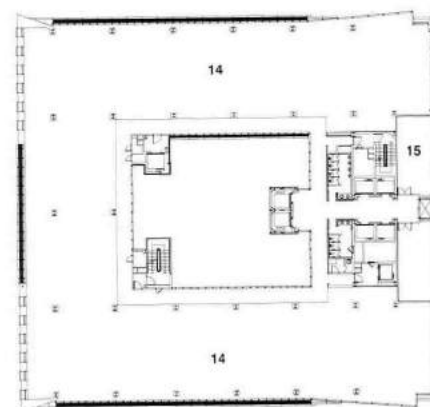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3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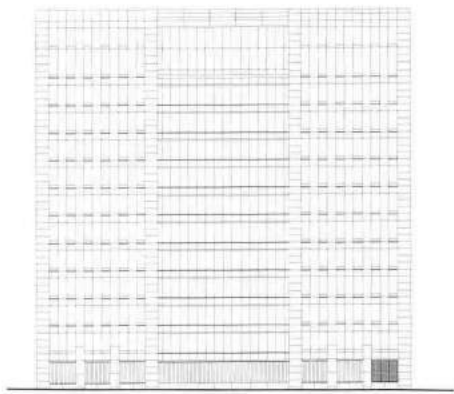


3~1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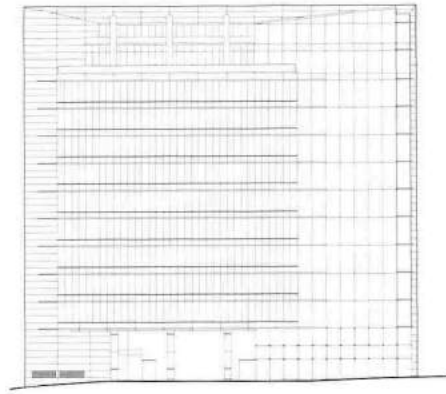
0 5 12 20m

1. 주차입구 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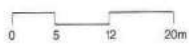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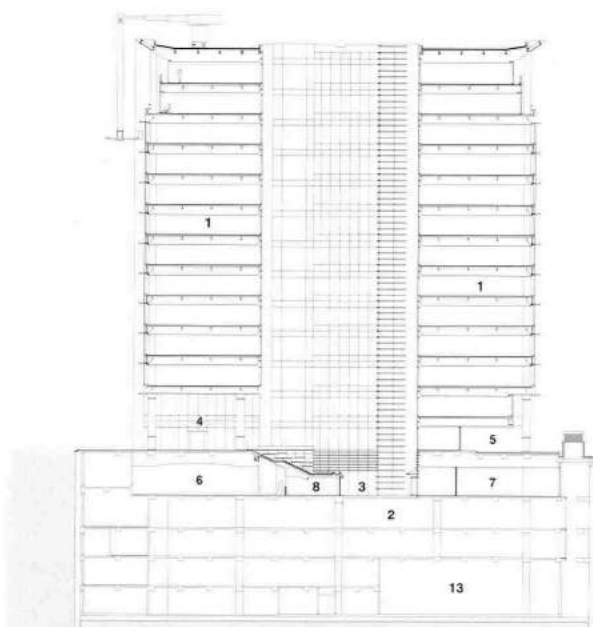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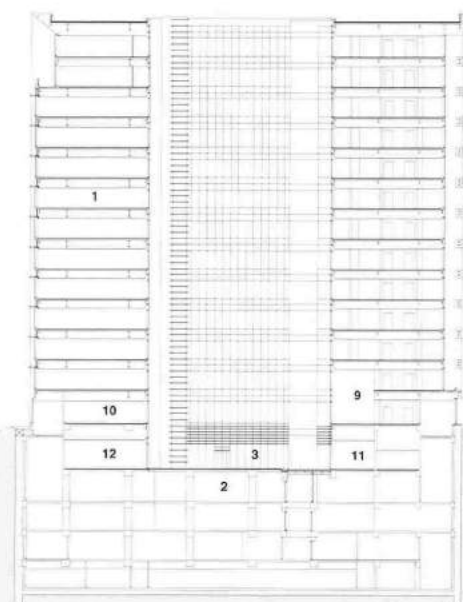
- | | |
|--------------|------------|
| 1. 외벽 디테일 | 5. 주 출입 로비 |
| 2. 주차장부 뒷면 | 6. 중정 천장 |
| 3. 중정을 내려다 볼 | 7. 중정 천장 |
| 4. 중정을 올려다 볼 | 8. 엘리베이터 홀 |



- 01. 사무실
- 02. 주차장
- 03. 중정
- 04. 주출입 필로티
- 05. 부출입 필로티
- 06. 콘서트홀(300석)
- 07. 직원식당(250석)
- 08. 카페
- 09. 로비
- 10. 은행
- 11. 휴
- 12. 전문식당
- 13. 기계실



단면도 1



단면도 2



회원작품 | Works

팍스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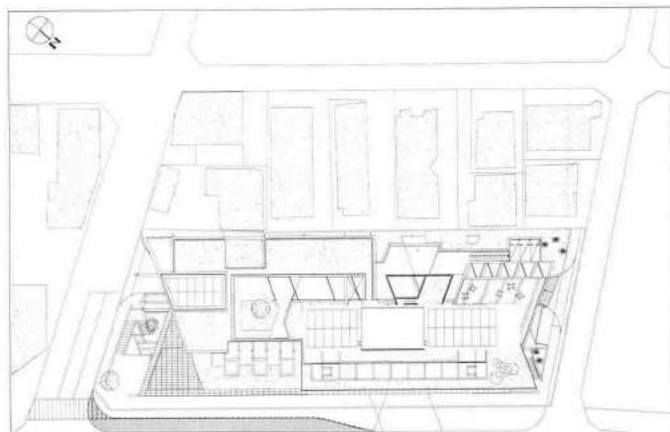
Pax Tower

건축사지 2007년 6월호 게재

설계자 (주)건축사사무소 지이 | 윤토현
시공자 노스웨스트건설(주)
건축주 뱅앤피(주)

● 배치도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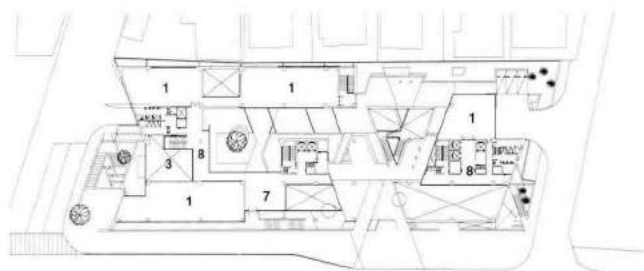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1-9외 4필지
지역지구	일부 일반상업지역, 일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주차장설치제한구역
주요용도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대지면적	4,006.90㎡
건축면적	2,145.76㎡
연면적	27,988.12㎡
건폐율	53.55%
용적률	402.32%
규모	지하 4층, 지상 15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내부마감	바닥 - THK30 화강석물갈기, 대리석물갈기, O.A FLOOR THK7 카펫타일, THK3 비닐계타일 벽 - 내부용 천연수성페인트 천장 - THK15 암면흡음텍스, THK9.5 석고보드2겹 위 비닐페인트
외부마감	THK24 복층칼라유리, THK3 내후성강판, THK3 알미늄 편칭메탈, THK4 하니컴패널
구조설계	김정선(CROSS구조)
설비설계	우진설비기술사사무소, 진호실업(주)
전기설계	다솔ENC기술, (주)대전사
설계담당	김동호, 신정섭, 임상규, 서영인, 김민경, 신용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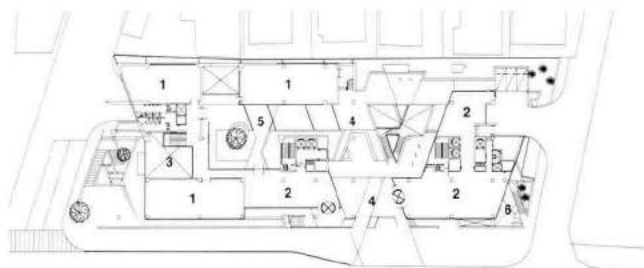
Location	231-9, nonhyeon-dong, Gangnam-gu, Seoul, Korea
Site area	4,006.90㎡
Bldg area	2,145.76㎡
Gross floor area	27,988.12㎡
Bldg coverage ratio	53.55%
Gross floor ratio	402.32%
Structure	SRC
Bldg. Scale	B4, F15





2층 평면도

- 01_ 업무시설
- 02_ 로비
- 03_ 아트리움
- 04_ 공개공지
- 05_ 내부마당
- 06_ 선큰
- 07_ 휴게 & 홀
- 08_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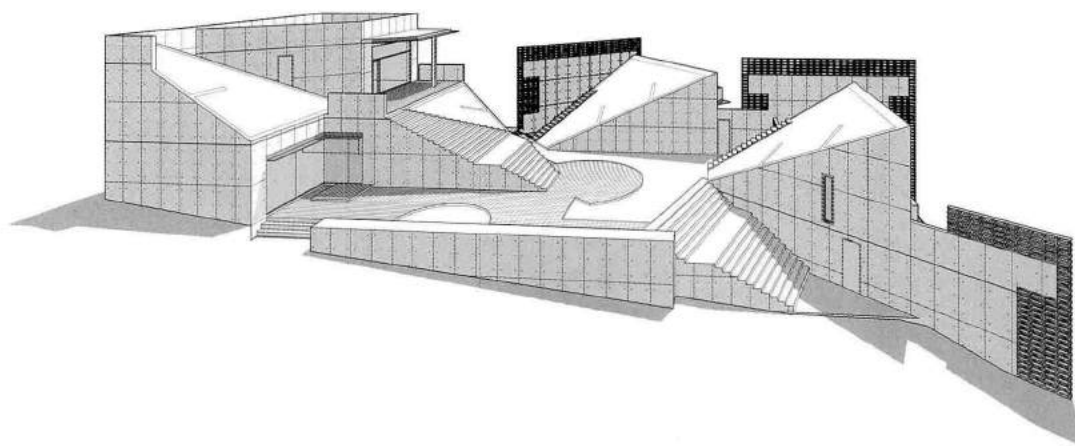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0 5 10 20m



열대의 꿈 Tropical D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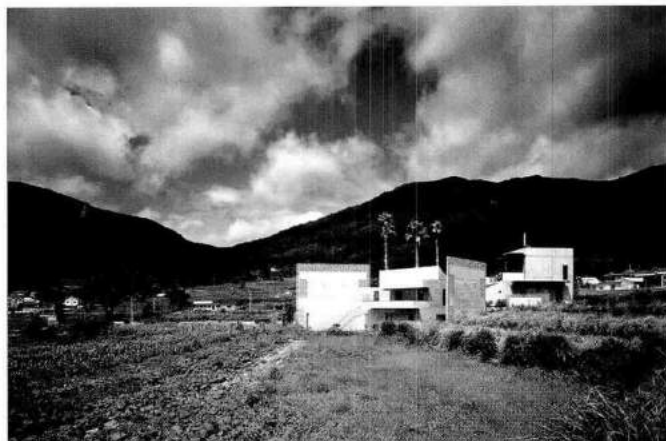
● 엑소노메틱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남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97번지
지역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주요용도 펜션
대지면적 985m²
건축면적 265.8m²
연면적 400.2m²
조경면적 200m²
건폐율 26.9%
용적률 40.6%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내부마감 바닥-우드플로어링, 벽-석고보드위 벽지,
천장-석고보드위 페인트
구조설계 조정민
인테리어 손솔임
기계·전기 세움
감리 토마 건축사사무소
시공 건축주 직영
설계담당 이종만, 유경동



Location 97, Mangchi-ri, Irun-myeon, Geje-si, Gyeongsangnam-do, Korea
Site area 985m²
Bldg area 265.8m²
Gross floor area 400.2m²
Bldg coverage ratio 26.9%
Gross floor ratio 40.6%
Structure R,C
Bldg. Scale B3, F9



2. 옥상에서 내려다 본 풍경
3. 스케치



‘열대의 꿈’은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인접하여 바다 조망이 좋은 경남 거제시 망치리에 위치해 있다.

대지 주변에는 여러 펜션이 바다를 둘러싸며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들어서 있다. 이중에서도 ‘열대의 꿈’은 주변 여느 건물과는 다른 외관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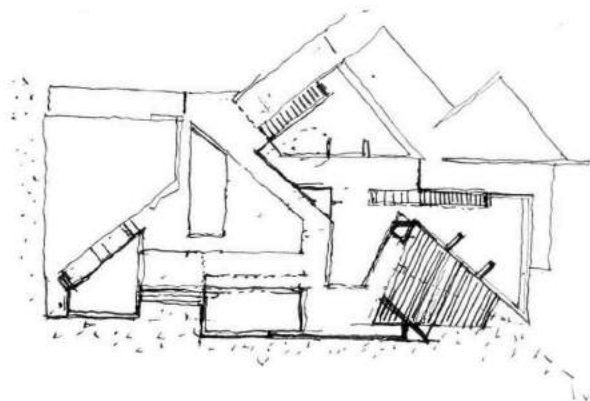
건물의 중앙에 심어진 아자수와 이국적인 건물형태는 낯선 공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호기심에 이끌려온 사람들은 건물이 껴리기가 아닌 펜션인 것에 더 깊은 호기심을 갖는다.

‘열대의 꿈’은 건축주의 아이디어로 스킨스쿠버, 트롤피싱, 요트, MTB 등의 레포츠를 투숙객들에게 연계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해놓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건축주는 스킨 스쿠버를 취미로 10년 넘게 국내외 이곳저곳을 다니며 열대지방의 리조트를 콘셉트로 한 펜션을 마음속으로 그려왔다. 그리고 거제의 풍광에 반해 ‘열대의 꿈’을 계획했다. 그러나 이런 건축주의 콘셉트는 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필자의 스타일을 믿은 건축주의 생각과 일치되어 ‘열대의 꿈’이 완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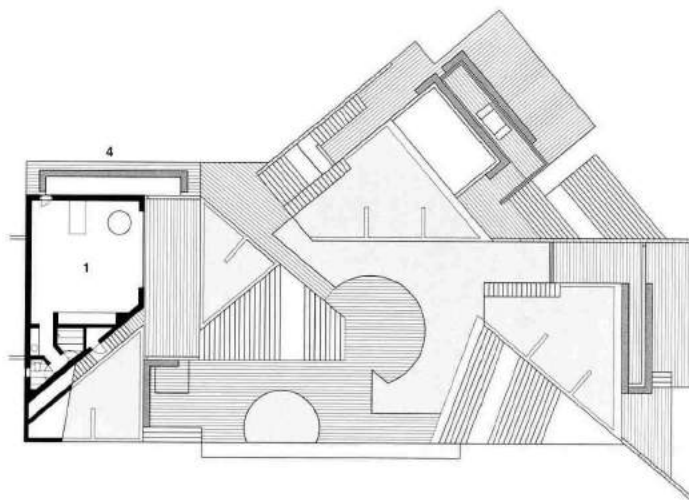
건물은 3개의 매스와 경사지붕 구조를 갖추고, 노출콘크리트와 콘크리트블록으로 마감되었다. 그러나 ‘열대의 꿈’에서의 노출콘크리트와 콘크리트블록은 같은 재료로 또 다른 이야기를 풀어낸다. 3개의 매스는 각각의 독립된 형태로 입구가 따라 구분되고 있으며, 각각의 매스에서 이어지는 중앙무대는 커뮤니티 장이자 이벤트 활용공간으

로 사용된다. 여기에는 무뎉뎉한 콘크리트 대신 나무 데크가 이용되었고, 경사지붕에는 잔디녹화가 마련되어 보다 이국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경사지붕은 바다 환경을 이용한 디자인적 요소로 ‘열대의 꿈’에서는 모든 객실에서 남해의 쪽빛 바다를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다. 경사면의 상부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에는 마치 부유하고 있는 느낌이다.

매스는 3개로 분리되지만 객실은 구획이 가능해 5개의 단독 별채로도 이용가능하고 객실마다 월풀과 노천탕 등의 스파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 펜션 안에는 클래식한 카페도 갖추고 있는데, 이공간은 커뮤니티를 돕고 조식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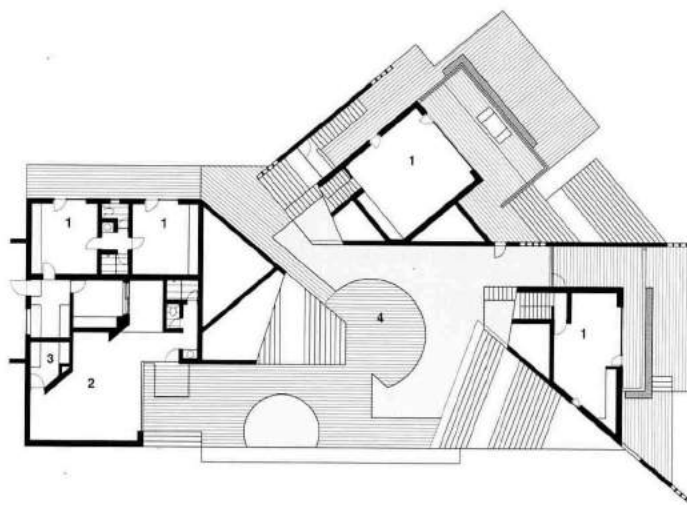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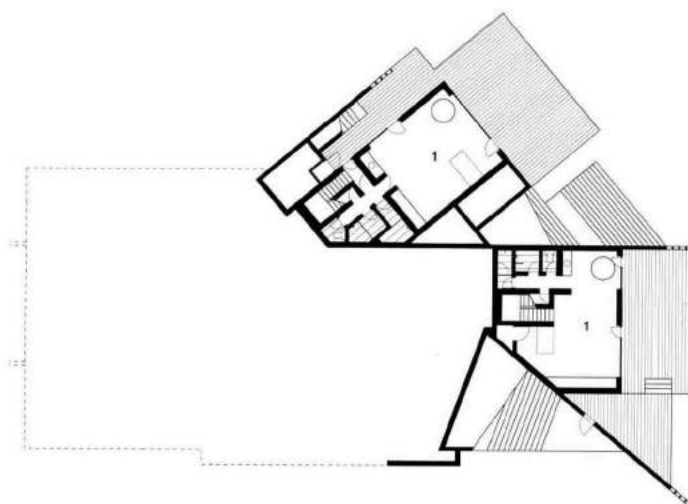


- 01. 거실
- 02. 카페
- 03. 주방
- 04. 중정무대-데크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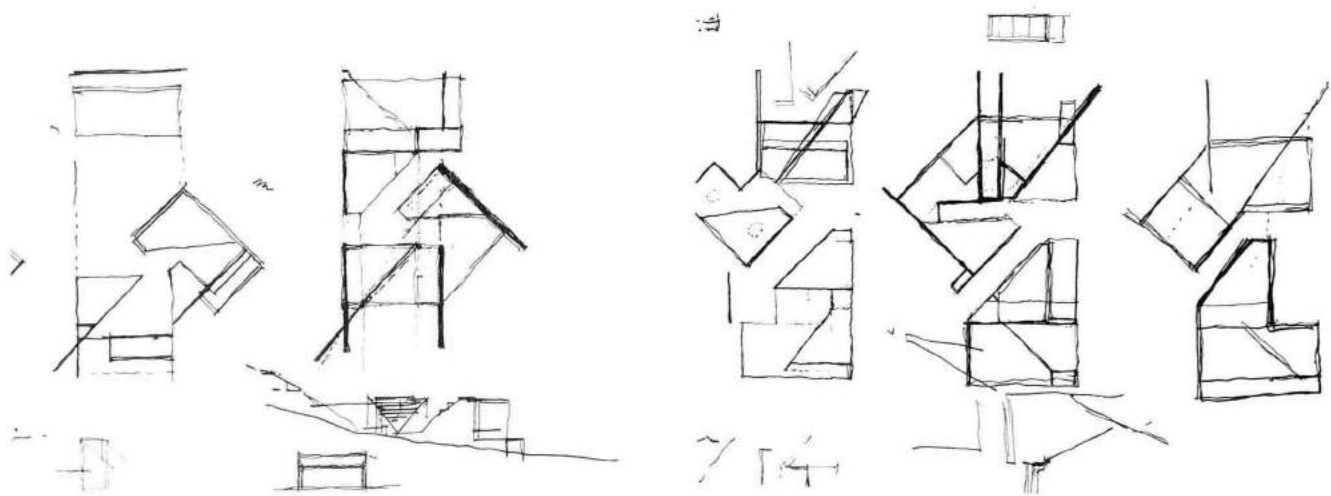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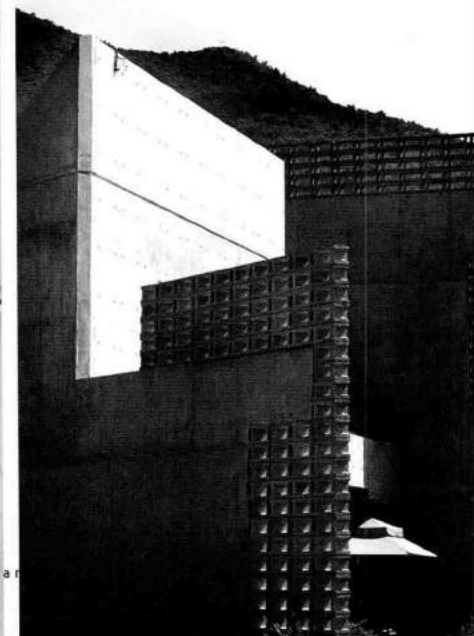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 1. 전경
- 2. 1층 옥외공간
- 3. 1층 카페입구
- 4. 2층 객실에서 내려다 본 전경





- | | | |
|----------|--------------|-------------|
| 1. 외부 전경 | 4. 1층 객실 노천탕 | 7. 1층 카페 내부 |
| 2. 거단 양계 | 5. 1층 객실 내부 | 8. 1층 카페 입구 |
| 3. 카페 양계 | 6. 2층 객실 내부 | |





평창동 주택 Quadrangle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416-7, 416-10번지
지역지구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주요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1,015㎡
건축면적	230.12㎡
연면적	396.64㎡
건폐율	22.67%
용적률	28.27%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내부마감	석고보드위 인테리어벽지
외부마감	ALC블럭위 스타코
구조설계	한빛구조엔지니어링
설비설계	세아엔지니어링
전기설계	우림이엔씨
시공사	이공건설
설계담당	한웅식, 임형진, 김정래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_채수옥)



Location 416-7, Pyeongchang-dong, Jongno-gu, Seoul, Korea

Site area 1,015㎡

Bldg area 230.12㎡

Gross floor area 396.64㎡

Bldg coverage ratio 22.67%

Gross floor ratio 28.27%

Structure R.C

Bldg. Scale B1, F2



2. 남서측 전경
3. 스케치
1. 남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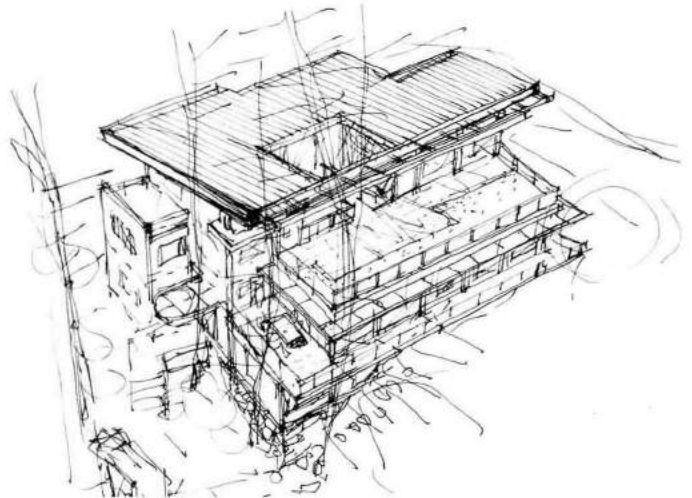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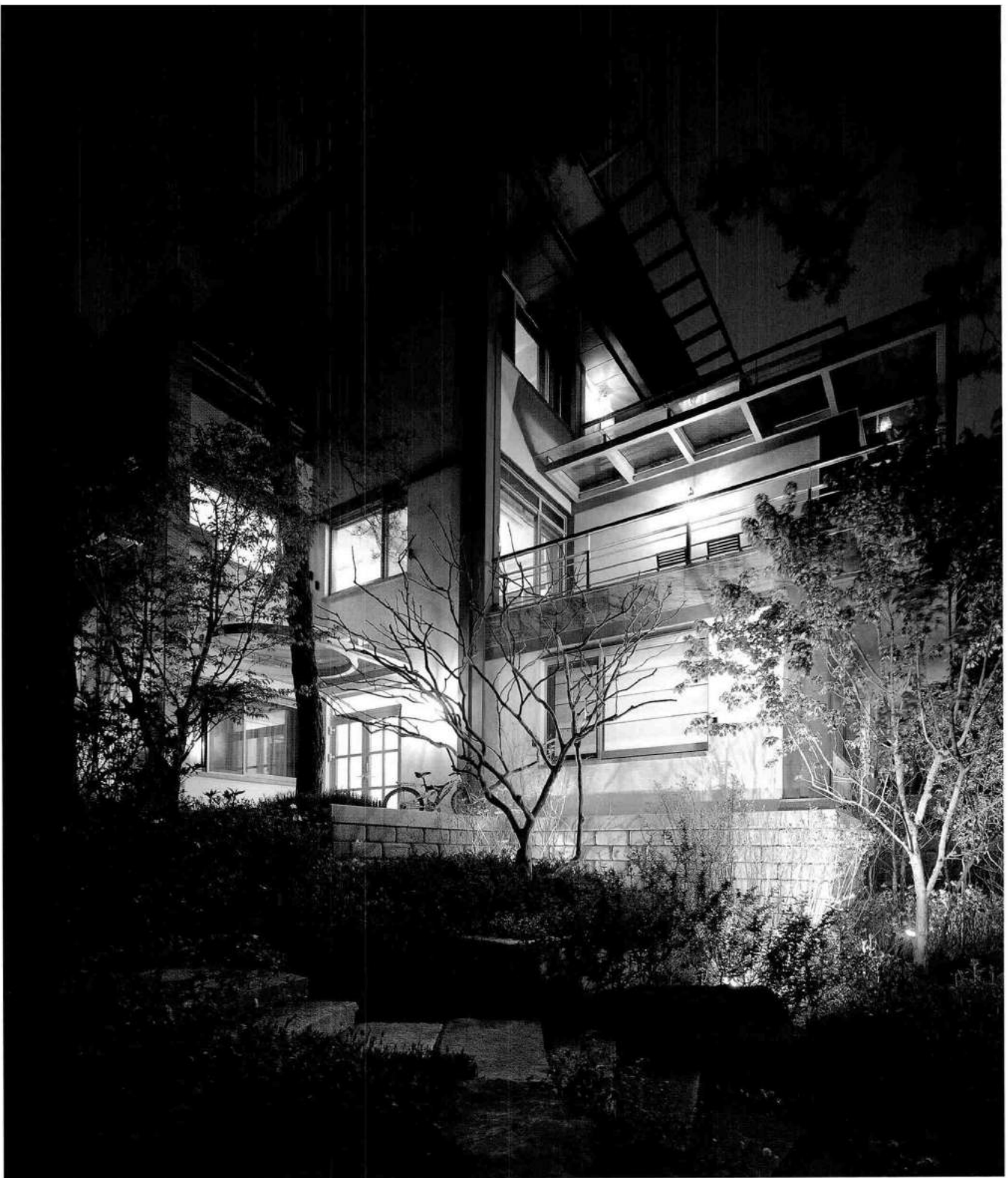
주택은 다른 어느 건물에 비해서도 대단히 섬세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공간, 기능, 구법, 재료를 모두 익혀야 한다. 주택은 시각적인 공간과 스케일에서도 섬세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손이 스치고 만져지는 촉감적인 공간으로 그려져야 한다. 주택은 빌딩과 달리 모든 부재와 요소들이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처마, 지붕, 마루, 방바닥, 기둥, 주춧돌, 창문, 창틀 등등 모든 것이 손이 닿고, 만져진다.

평창동 주택의 별칭을 '쿼드랭글(Quadrangle)'로 지었다. 이전 필자의 주택인 트라이앵글-화성주택과 관련해서 일종의 주택 시리즈라는 생각에서이다. 사각형의 각변을 삼등분하여 9개의 사각형으로 나누고 그 중심에 중정을 만든다. 중정의 후면은 계단이 되고, 좌측은 식당, 좌측 후면은 주방, 전면 두칸은 거실, 우측 두칸은 안방 영역이 된다. 전면의 거실은 두어단 레벨을 낮추어 주방, 식당에서의 시선이 마당을 향하는데 방해가 없도록 고려한다. 이 사각형의 중정 중심의 평면에서부터 쿼드랭글을 그리기 시작한다.

기존에 충주백석을 쌓아 붙인 나름대로 고급주택의 면모를 가진 주

택이 있었다. 건축주는 헐고 다시 짓겠다는 것을 개보수가 어떻겠냐고 건의 했었다. 왜냐하면 현장을 보고나니 그것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사가 심한 평창동의 땅에서 허가를 진행한





1. 넘사벽 야경

다는 것이 대관업무상 애로사항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 다루면 리모델링으로도 좋은 건축을 만들 수 있을 것도 같았다.

몇번의 미팅을 통하여 신축에 대한 건축주의 의지를 확인하고 철거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여러 차례 협의와 설계안을 거쳐서 허가를 낸 설계안이 최종적으로 건축주의 생각을 설득하지 못하고 취소되고 재설계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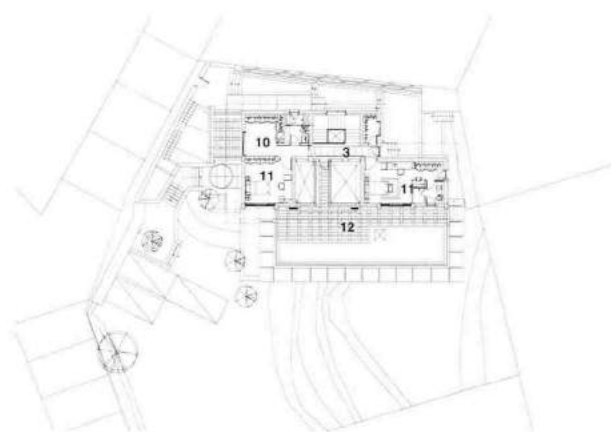
재설계의 주된 방향은 주택의 주향을 남향에 가깝게 조정하는 것과 내부 평면의 규모 조정, 주방, 거실, 식당의 기능적인 연결성이었다. 그

러한 해결책이 중정을 삽입하고 사각형 평면으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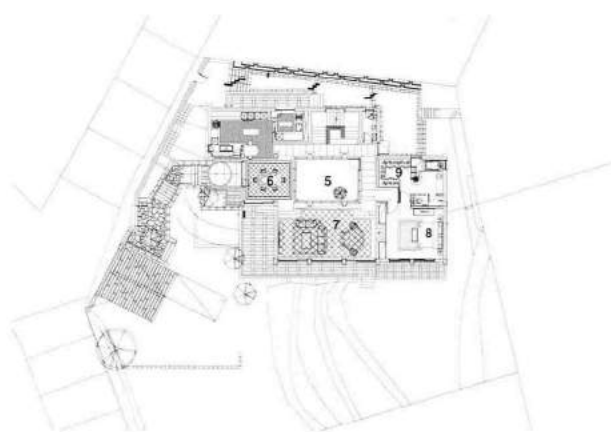
주택은 3미터의 기본 모듈에 의해서 평면과 입면이 짜여져 있다. 3미터의 기본 모듈은 주택에 규모와 관련해서 모듈의 크기로는 조금 적은 치수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여러 번의 스케치를 통하여 극복되면서 평면을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있게 하고 공간 크기 개념을 분명하는데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2층의 테라스는 조망이 좋은 집을 위하여 단순히 집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사건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건축적인 장치이다. 2층 테라스에서 날이 좋은 날은 멀리 목동 아파트 단지가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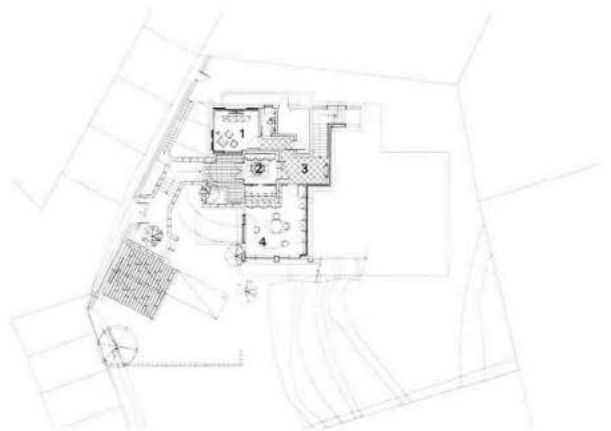
- 01. 게스트룸
- 02. 현관
- 03. 복도
- 04. 서재
- 05. 중정
- 06. 식당
- 07. 거실
- 08. 안방
- 09. 드레스룸
- 10. 작업방
- 11. 자녀방
- 12. 발코니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0 3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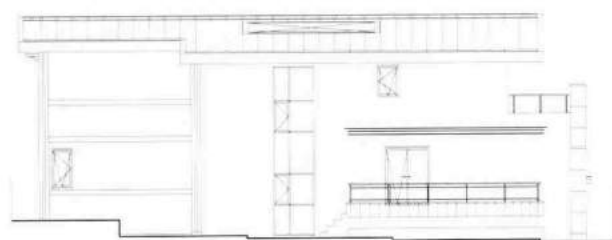
인다고 한다.

경사가 심한 지형을 극복하면서 지하층의 전면이 다 드러나는 건물이 되었다. 기존 지형과 각층의 레벨을 맞추면서 쉽지 않은 디테일이 생겼다. 다행히 조경을 담당한 전문가와 건축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두단으로 마당이 형성되고 그 사이의 경사진 정원이 자연스럽게 건물과 만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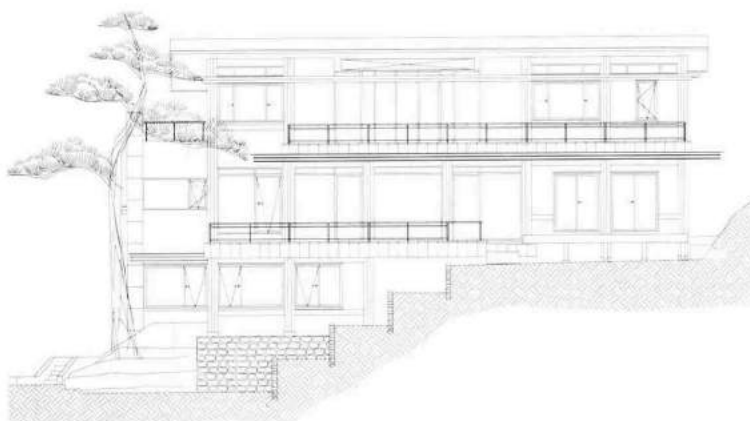
외관은 지하층은 기단을 의미하는 화강석으로 처리하고 1층과 2층은 콘크리트 기둥을 목조로 감싸서 처리하고 일반 벽부분은 백색 회벽으로 처리했다. 하얀 회벽과 목조의 기둥의 조화가 모던함과 전통

적인 가구식 건축의 느낌을 보기 좋게 만들어 주었다. 기단부에 쌓아 붙인 화강석의 디테일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와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철거와 잔존의 의사결정의 반복을 겪었고, 기둥을 두른 나무의 방부도료인 오일스테인 색을 결정하면서 생각보다 붉은 색이 진하게 발색되면서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서 진행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가 노력하는 경우 모든 일은 마무리를 위해서 조정되게 되어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건축주의 신중함과 디자인에 대한 존중, 시공자의 성의를 통해서 좋은 주택으로 완성되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즐겁고 밝게 이용되는 건물이었으면 하고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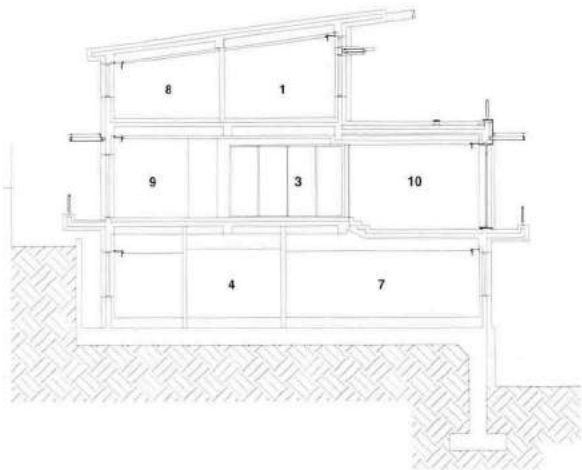


북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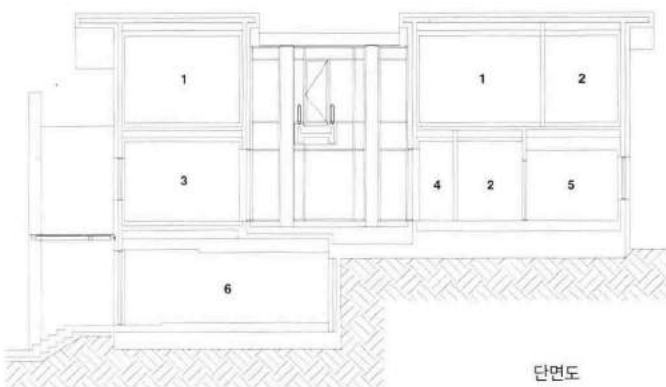


남측 입면도

0 3 5m



단면도



단면도



- 3. 발코니
- 4. 발코니와 브릿지
- 5. 2층 브릿지
- 6. 거실에서 본 중정
- 7. 모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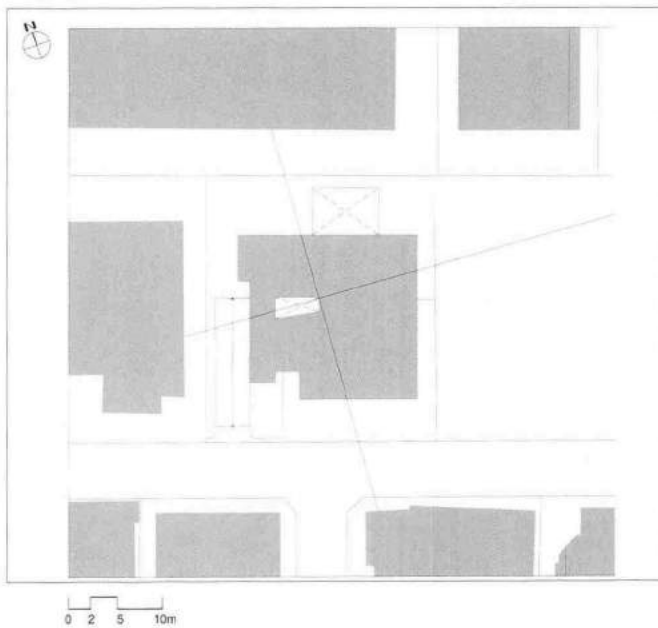
- 01. 자넵방
- 02. 드레스룸
- 03. 식당
- 04. 복도
- 05. 화장실
- 06. 현관
- 07. 서재
- 08. 작업방
- 09. 주방
- 10. 거실



퍼즐 하우스 PUZZLE HAUS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4-3번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공동주택(아파트 15세대),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737.3m ²
건축면적	398.30m ²
연면적	2,488.27m ²
건폐율	54.02%
용적률	199.49%
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라임스톤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티타늄아연강판, 복층로이유리
구조설계	(주)제이앤지구조 엔지니어링
설비설계	(주)청파설비기술단
전기설계	(주)무림설계기술단
시공사	주식회사 에스디에이
설계담당	심관홍, 방현기, 박주희, 노영우



Location	94-3, Cheongdam-dong, Gangnam-gu, Seoul, Korea
Site area	737.3m ²
Bldg area	398.30m ²
Gross floor area	2,488.287m ²
Bldg coverage ratio	54.02%
Gross floor ratio	199.49%
Structure	R.C
Bldg. Scale	B2, F6





도심속 소공원옆에 위치한 퍼즐하우스는 저층부의 근린생활시설과 상층부 공동주택 15세대의 주상복합시설로 14세대의 임대세대와 1세대의 주인세대로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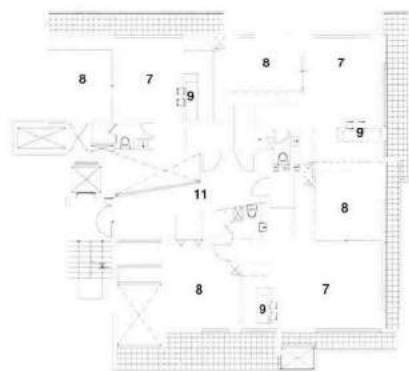
퍼즐형태의 제안으로 시작된 작업은 “퍼즐은 다원체이며 그 크기와 모양에 상관없이 개체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논리 설정에서부터

출발하여 그개념을 공동주택에 적용 발전시키는 과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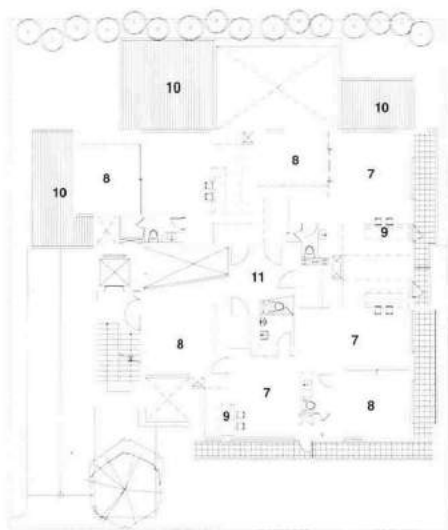
단위퍼즐인 6Type의 Unit가 빛우물을 공유하며 둘러쌓여 맞춰지고 기능확보를 위해 밀고 당기고 빼고 더해진 Unit는 그대로 외부를 구성한다 구성된퍼즐은 지상에서 들어올려지고 그 밑으로 바람과 빛이 드리우면 고저차로 단절된 도시와의 교감이 자연스레 생겨나겠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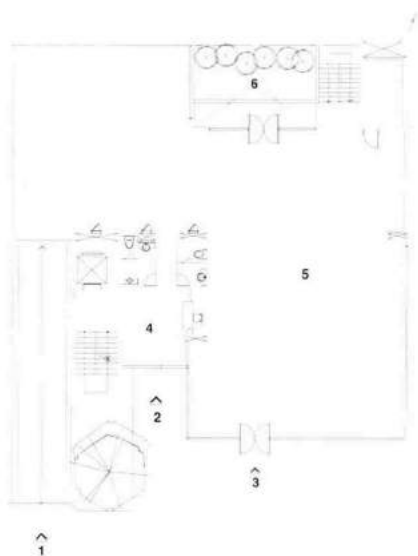
- 01. 주차장출입구
- 02. 주출입구(주택)
- 03. 주출입구(근생)
- 04. 현관
- 05. 근린생활시설
- 06. 선실
- 07. 거실
- 08. 침실
- 09. 주방및 침실
- 10. 데크
- 11. 복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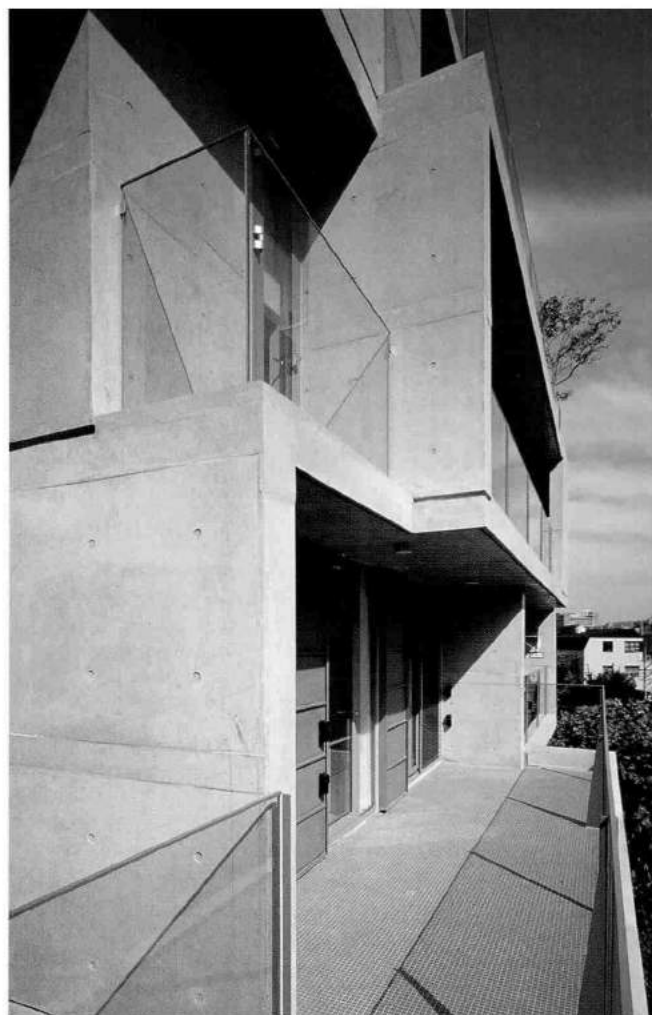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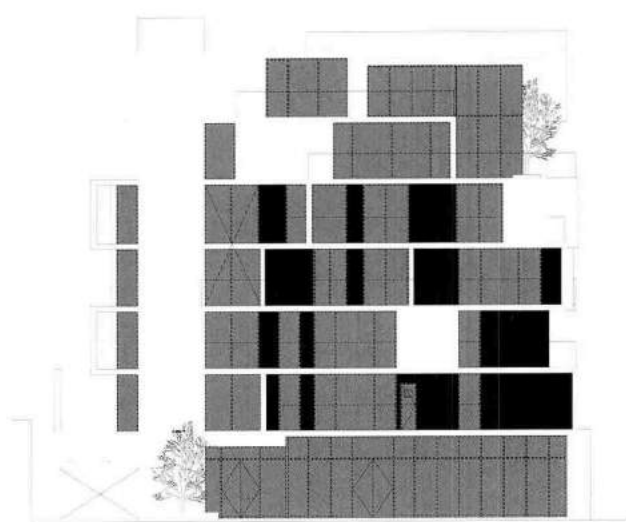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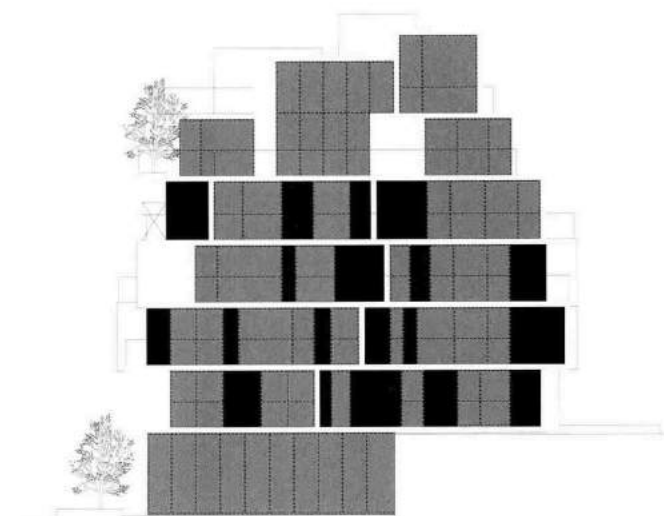
- 1. 전경
- 2. 부엌
- 3. 부엌
- 4. 침실
- 5. 침실
- 6. 외부모습

0 2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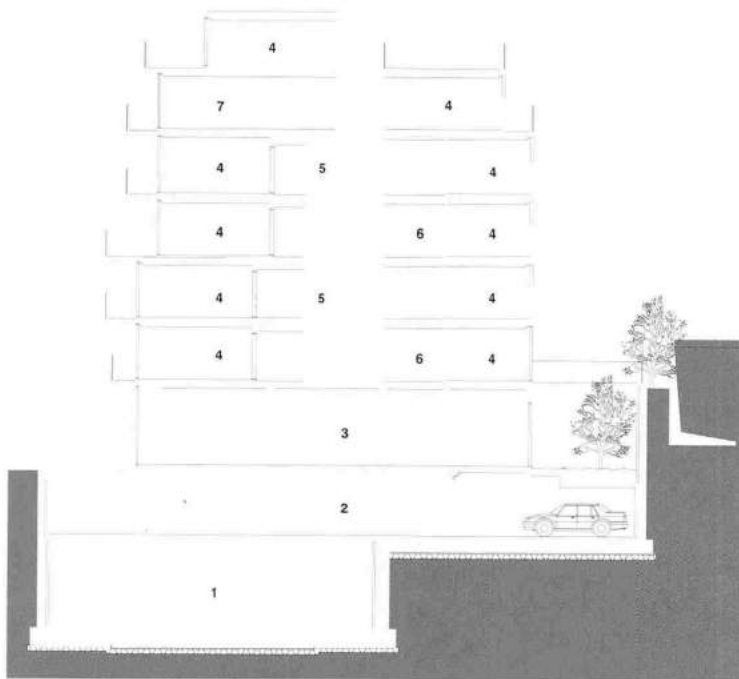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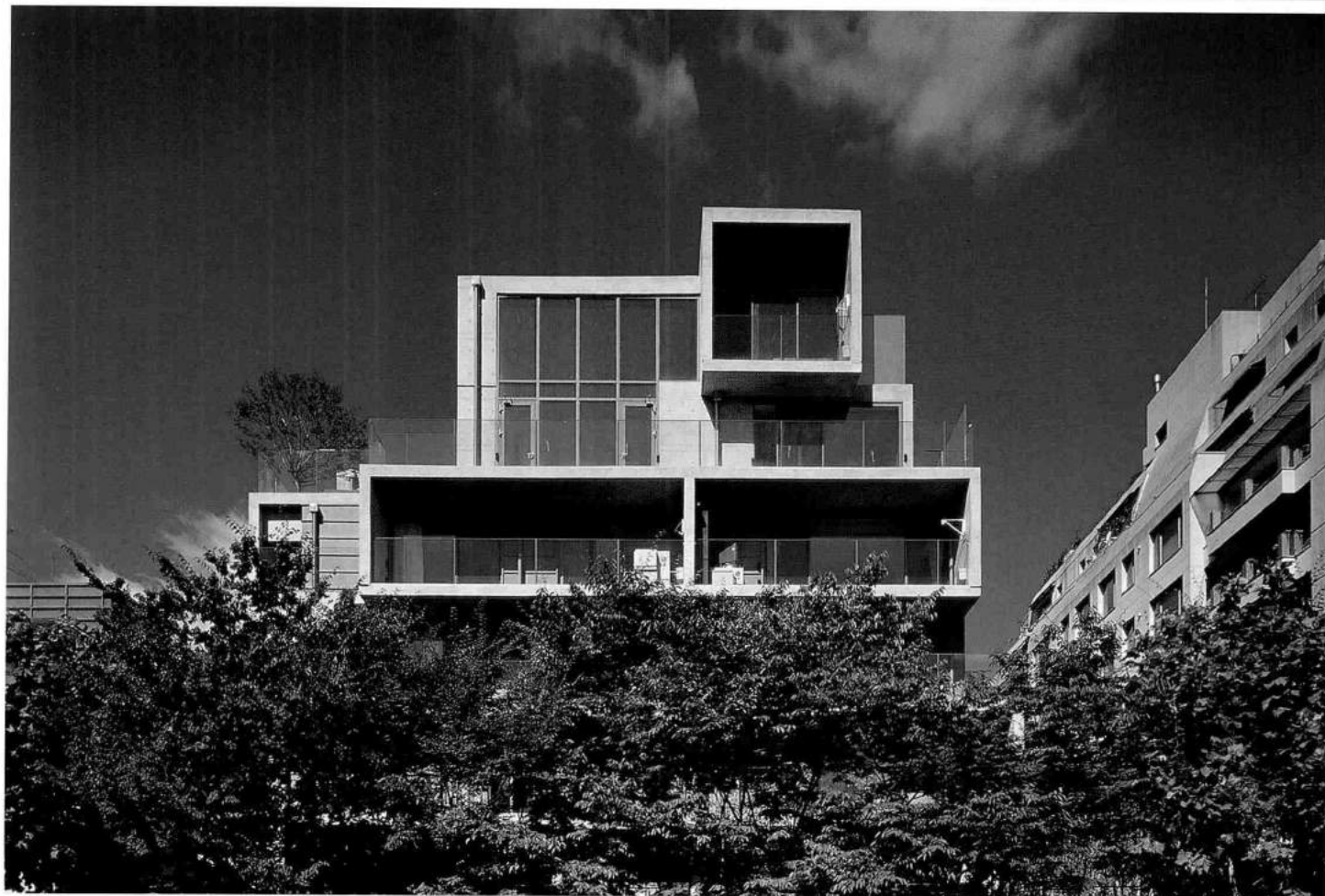




중단면도

1. 외부전경
2. 다락
3. 다락
4. 다락
5. 내부 전경
6. 다락

01. 물탱크실
02. 주차장
03. 근린생활시설
04. 침실
05. 복도
06. 현관
07. 주방 및 식당



설계경기 | Competition

동래구 장애인복지회관

Dongnae-gu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당선작 / 이상헌 정회원 · 강병영 정회원
(주. 회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436-19, 50번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최저고도지구(6m)
주요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500.24㎡(실사용면적)
건축면적 299.36㎡
연면적 1,324.73㎡
건폐율 59.85%
용적률 208.26%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발주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설계담당 이동원, 조영래, 김미현, 김영환, 정주연,
김용년, 이성우

CONCET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반인 보다 조금 불편함을 지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 이번 동래구 장애인복지회관은 그런 맥락에서 출발하여 다함께 어울려 이 사회에 존재해야 한다는 주제로 다가갔다. 더불어 동래구는 유구한 역사와 유서깊은 전통문화를 소중히 가꾸어 온 고장으로 이를 옥외휴식공간과 데크, 옥상정원으로 형성화시켰다.

배치계획

- 북측의 전면 30m로와 남서측의 3m 막다른 도로로 형성된 대지는 전면 도로의 소음으로 저층부에 실 배치를 피함
- 주진입로에서 정면성을 확보하여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보행축을 설정

- 대지에 순응한 배치로 휴게공간을 중심으로 각 시설물을 배치

동선계획

- 차량과 보행동선을 분리하고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구축해 진입의 안전성을 확보
- 모든 접근로의 무장애 공간을 형성, 단순 명쾌한 공간구성으로 알기 쉬운 동선확보

평면계획

- 외부 휴게공간과 데크를 통해 시설 이용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외부공간 확보
- 옥상정원으로 도심의 자연공원 형성
- 가변형 공간과 고정형 공간의 분리 배치로 공간활용의 극대화
- 옥상에 공연장을 설치해 야외 공연과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 형성
- 층별 발코니를 이용한 피난공간 확보



설계경기 | Competition

동래구 장애인복지회관

Dongnae-gu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당선작 / 이상현 정회원 · 강병영 정회원
(주. 회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436-19, 50번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최저고도지구(6m)
주요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500.24㎡(실사용면적)
건축면적 299.36㎡
연면적 1,324.73㎡
건폐율 59.85%
용적률 208.26%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발주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설계담당 이동원, 조영래, 김미현, 김영환, 정주연,
김응년, 이성우

CONCET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반인 보다 조금 불편함을 지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 이번 동래구 장애인복지회관은 그런 맥락에서 출발하여 다함께 어울려 이 사회에 존재해야 한다는 주제로 다가갔다. 더불어 동래구는 유구한 역사와 유서깊은 전통문화를 소중히 가꾸어 온 고장으로 이를 옥외휴식공간과 데크, 옥상정원으로 형성화시켰다.

배치계획

- 북측의 전면 30m로와 남서측의 3m 막다른 도로로 형성된 대지는 전면 도로의 소음으로 저층부에 실 배치를 피함
- 주진입로에서 정면성을 확보하여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보행축을 설정

- 대지에 순응한 배치로 휴게공간을 중심으로 각 시설물을 배치

동선계획

- 차량과 보행동선을 분리하고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구축해 진입의 안전성을 확보
- 모든 접근로의 무장애 공간을 형성, 단순 명쾌한 공간구성으로 알기 쉬운 동선확보

평면계획

- 외부 휴게공간과 데크를 통해 시설 이용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외부공간 확보
- 옥상정원으로 도심의 자연공원 형성
- 가변형 공간과 고정형 공간의 분리 배치로 공간활용의 극대화
- 옥상에 공연장을 설치해 야외 공연과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 형성
- 층별 발코니를 이용한 피난공간 확보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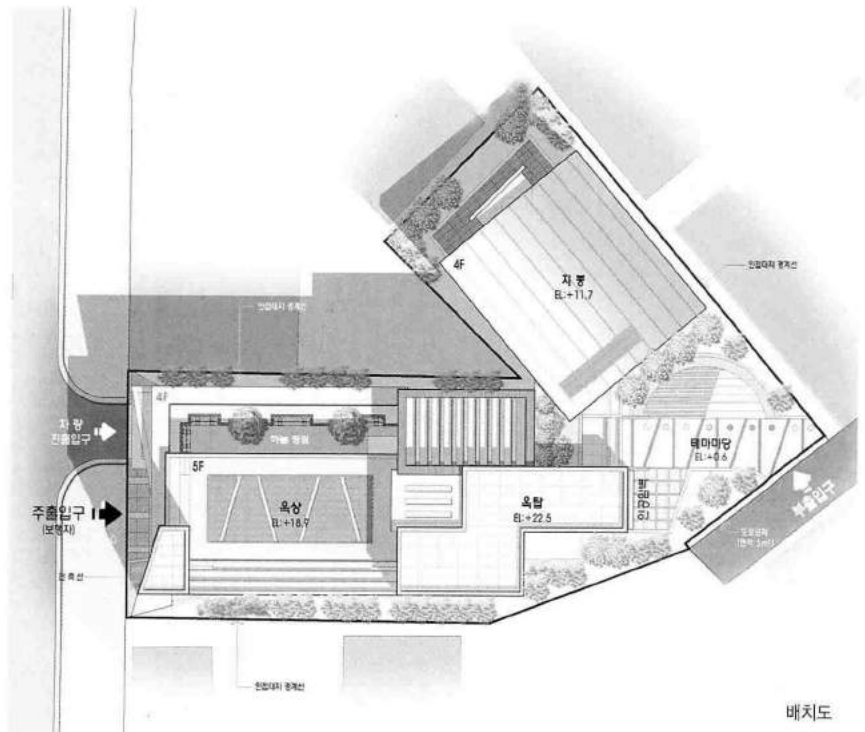
- 차량과 보행자 출입구를 쉽게 구별
- Void공간을 통해 도시 전면에 대응하는 입면 구성과 자연의 유입으로 정원 형성
- 목재패널, 노출콘크리트, 시멘트패널 등으로 리듬감 있는 입면구성과 더불어 전통적인 이미지 형성

단면계획

- 단순 명쾌한 수직동선계획
- 적극적인 빛 유입(Void)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

- 장애인이 출입이 가능한 접근로 형성(단지내 보도 유효폭 3.2m 확보)
-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 장애인 주차대수 6대중 1대 설치
- 출입구 가까운 곳에 다기능 화장실 설치
- 13인승 승강기 적용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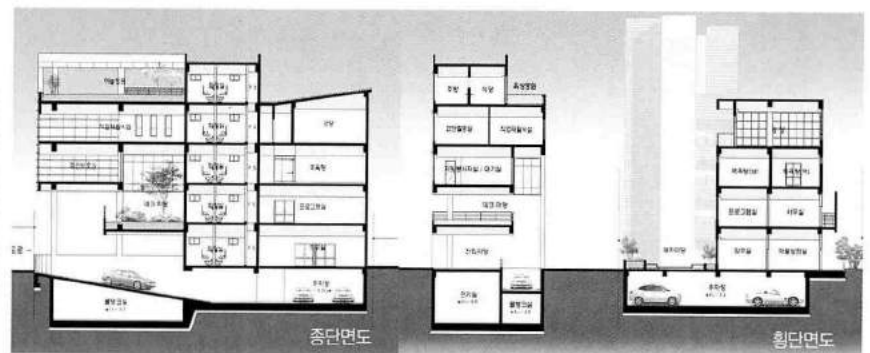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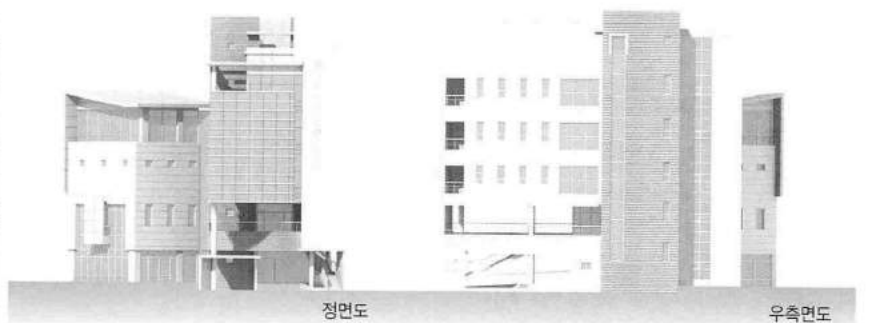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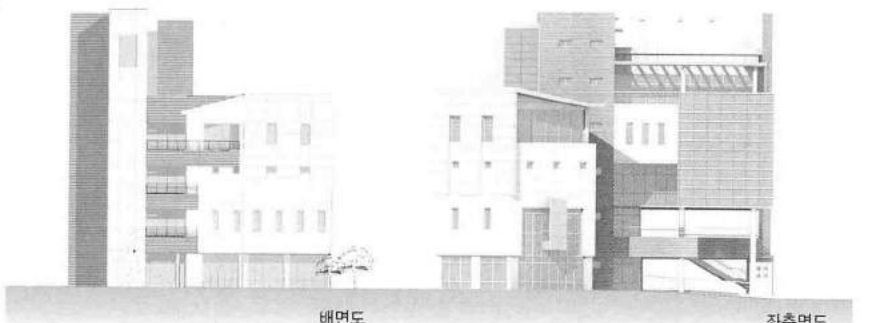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동래구 장애인복지회관

Dongnae-gu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우수작 / 이만희 정회원
(주. 서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436-19, 50번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최저고도지구(6m)

주요용도 노유자시설(장애인복지시설)

대지면적 500.24㎡(실사용면적)

건축면적 299.92㎡

연면적 1,259.89㎡

건폐율 59.96%

용적률 251.86%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설계담당 심중현, 한선영, 조선정

동래구 장애인복지회관의 계획대지는 전면으로 30m 대로(충렬로)와, 배면으로 3m 막다른 도로와 접해있다. 때문에 충렬로와 면해있는 북측 전면만이 정면성을 가지고 도시와 만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지의 전면 선상에는 중저층의 상업군이 형성되어 있고, 그 밖의 3면에는 저층의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상태이다. 대지의 위치가 안락교차로와 근접해 있고 대로와 면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시와의 관계맺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대지가 가지는 조건(격인 'ㄱ'자 형상, 12m의 좁은 대지 폭, 인접 대지경계선에 붙은 옆 건물)은 건물을 배치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형적인 대지 형태에 맞게 매스를 2동으로 나눠 브릿지로 연결하였고 전면 도로 가까이 주출입구를 둬으로써 도시의 흐르는 동선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지 안쪽 1층에는 필로티를 이용한 자주식 주차장을 배치하여 보·차 분리에 의한 보

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 건물로의 진입이 바로 이루어지는 간결하고 명확한 동선체계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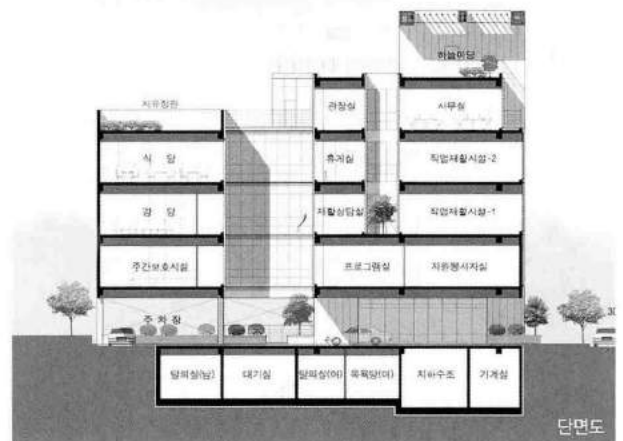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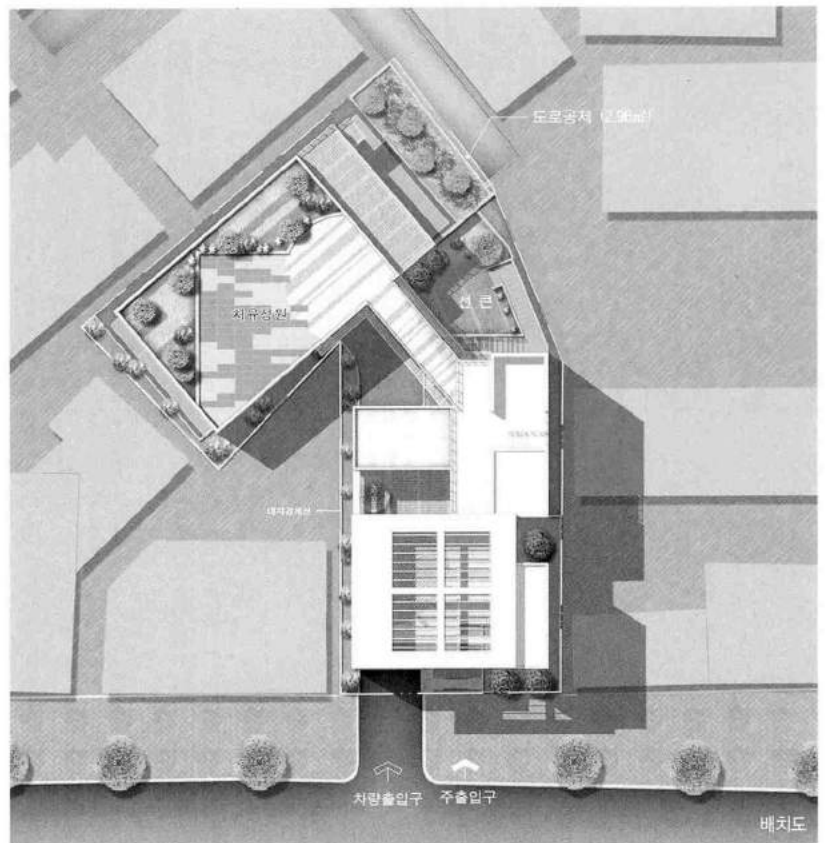
건물의 외피(skin)는 폴리메탈패널과, 고밀도 목재패널 그리고 칼라복층유리를 이용하였다. 자연친화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목재패널은 장애인 복지회관에 안정감 줄인 재료라고 할 수 있다. 30m 도로와 접하여 도시와 마주하고 있는 전면매스는 빠른 속도감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조형적인 입면 디자인과 메탈패널, 유리를 이용한 미래지향적 이미지의 조화로 새로운 도시풍경을 만들고자 했던 설계의 방향과 잘 부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통일된 입면패턴과 재료들의 융합은 2개의 매스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더 나아가서는 도시와 하나되는 통일감을 가진다. 평면계획은 재활프로그램영역, 사무관리영역, 서비스영역, 코어영역으로 구성하여 실과 코어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평면을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각 프로그램실들은 중



정, 옥상정원, 선크가든, 발코니 등 다양한 열린 공간과 연계되어 내·외부공간의 쾌적한 환경조성이 가능하다. 실들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가변형 벽체를 이용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공간을 계획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내·외부동선은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식별성과 안전성을 가진 명확한 동선체계를 목표로 계획하였다.

외부공간에는 중정, 선크가든, 옥상정원, 시설조경 등을 계획하여 자연의 유기적인 연결동선을 확보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외부공간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옥상녹화 계획으로 최상층은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가지게 되고, 어느 장소에서든 접근이 가능한 옥외공간을 계획함으로써 비상재해대비시설로의 활용 또한 가능하다.

이처럼 동래구 장애인복지회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중규모의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모델을 제시하고, 새로운 도시풍경으로 자리잡고자 하였다.



동래구 장애인복지회관

Dongnae-gu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가작 / 신동호 정화민

(주, 아키포럼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락동 436-19외 1필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최저고도지구(6m)

주요용도 노유자시설(장애인 복지시설)

대지면적 500.45㎡

건축면적 299.26㎡

연 면 적 1,263.59㎡

건 폐 율 59.79%

용 적 륜 226.19%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설계담당 이준수, 김현호, 김영송

건축의 방향

- 사회적 인식전환을 제시하는 장소
- 지역사회 참여 및 생활장소로서의 기능
- 격리주의에서 통합적인 공간으로의 기능
- 재활서비스 제공, 복지활동의 통합조정센터의 기능
- 사회교육 장소로서의 기능
- 행사, 전시, 자료열람의 기회제공

배치계획

- 대지형태에 순응하여 대지의 효율성 최대화
- 1층 필로티설치 : 휴게마당과 열린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인접주거지로부터의 용이한 보행자 접근동선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이용 유도
- 2개의 교차되는 축의 결합점에 수직동선존이 위치함으로써 동선의 단축 및 기능성을 극대화시킴

단면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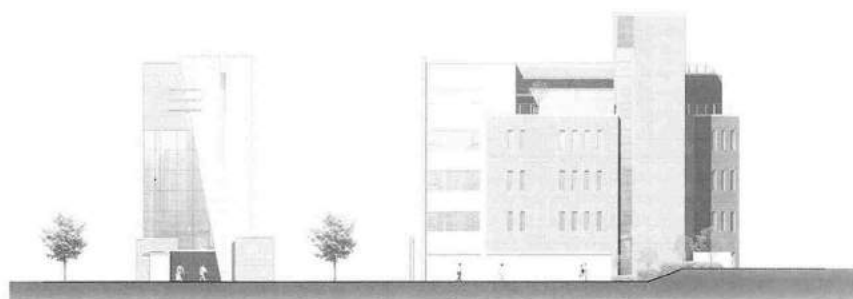
- 관리서비스 기능과 기술, 원조 및 생활서비스 기능의 수직적 분리로 각 기능별 조닝을 형성
- 기능적인 편리성에 따라 자유로운 배열이 가능하도록 경량칸막이로 내부벽체를 설치하여 평면공간의 실요성을 높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면계획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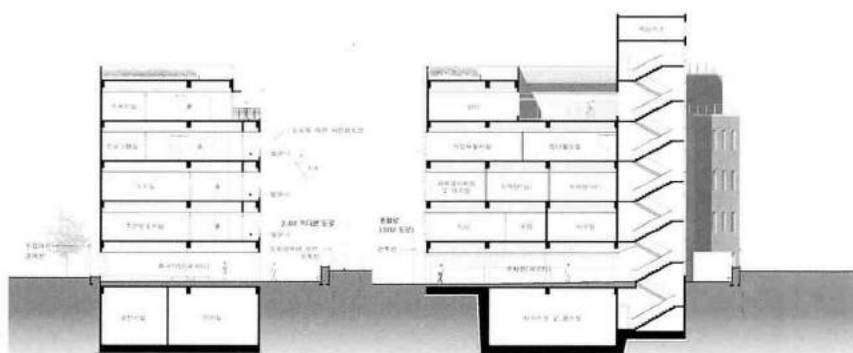
- 사회적 인식을 형상화한 이미지로 디자인하여 인지성을 부각시킴
- 입면의 형태로서 사회속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아직까지는 어두운 현실을 형상화시키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인(人)- 희망을 표현함으로써 사회와의 화합과 통합의 상징을 나타내며, 재료적으로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의 사용으로 어둠을, 점토벽돌로 따뜻함을, 투명유리로 밝음을 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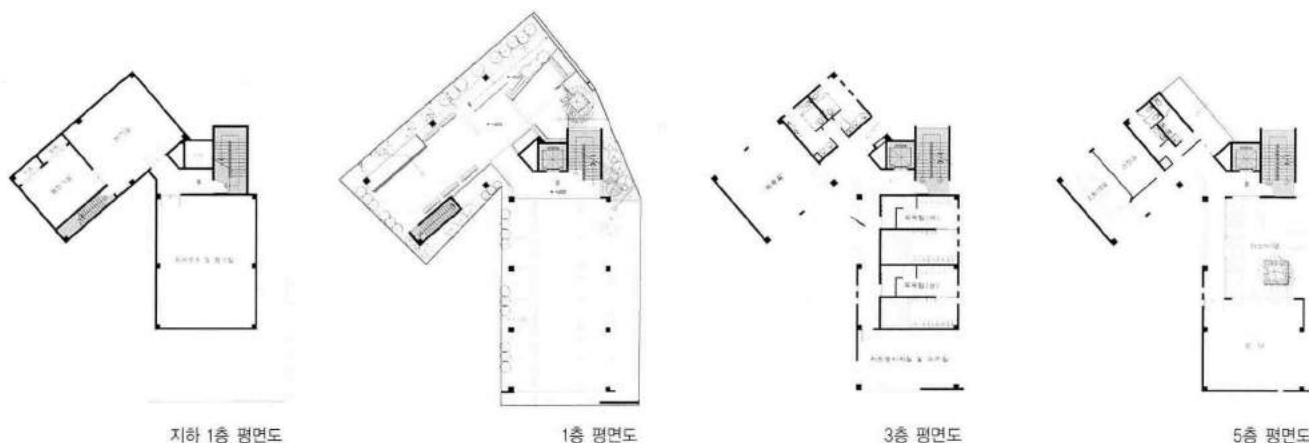
- 건물의 특성과 조화된 외부녹지공간의 적극적 활용
- 다층구조의 녹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입체적이고, 풍부한 녹지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각 조경공간으로의 유기적 연결
- 1층 햇살마당 : 안과 밖,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이어주는 전이공간, 보행자의 식별성과 안전성을 위한 바닥재 도입(탄성고무칩, 우드프루밍, 점토블럭)
- 5층 담소마당 : 지상과 옥상의 입체적 녹지축의 원활한 연계로서 건물내부에서 외부로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5층 휴게데크
- 옥상 하늘정원, 향기정원 : 정형적이고 지루한 디자인에서 벗어나 흥미로운 포장패턴의 율동감이 이용자들에게 활력을 주며, 새소리, 꽃향기, 실바람 등 오감을 자극하고, 두 테마정원을 연계하여 옥상녹화 시스템을 적극 도입함.



우츠면도



단면도 2



전 한 중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교수
by Jun, Han-jong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Innovative Paradigm for Quality Improvement of Architectural Design

국내 건축설계분야는 건설산업의 성장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하였으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왜곡된 발주 시스템은 능력있는 건축사의 시장참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설계도서가 하청을 통해 생산되고 있고, 각 분야 간의 느슨한 협업시스템으로 인해 검토되지 않은 설계도서들이 현장에서 설계도면간의 불일치나 비기능적, 비경제적인 설계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시공업체 중심으로 고착화 되어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도 설계나 엔지니어링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건설정책의 초점은 시공분야에 맞

추어져 있고,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설계나 엔지니어링 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도가 지속될 경우, 중국에는 설계나 엔지니어링업체가 시공업체에 종속되어 우리나라 설계분야의 전문화 및 설계 경쟁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¹⁾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건축설계업 발전 종합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국내 건설·건축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기 보다는 건축설계분야의 문제점 즉, 설계경쟁력 약화, 느슨한 협업시스템 그리고 이에 따른 건축설계품질의 저하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목 차

1.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2. BIM을 적용한 국외 사례
3. BIM을 적용한 국내 사례
4.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의 국내적용 방안
5. BIM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필자 : 전한중 / 현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부교수

전한중 교수는 한양대 학사와 석사 졸업 후, 호주 시드니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 BRC(BIM Research Center) 자문교수
- 한국교육시설학회 이사
-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이사
- Virtual Construction 3.4세부 연구과제(삼차원설계 지침개발에 관한 연구) 공동연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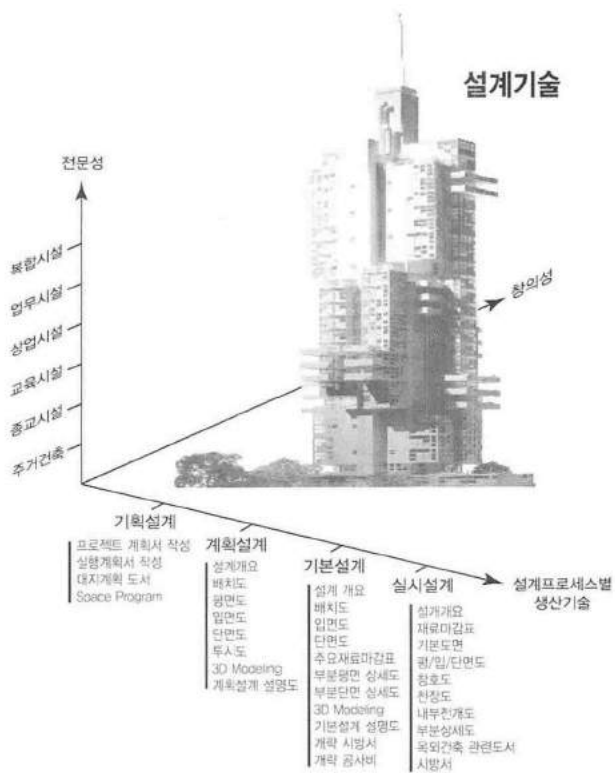
1)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06.4) 건축설계업 발전 종합 방안 연구, 대한건축사협회

Innovative Paradigm for Quality Improvement of Architectural Design

1.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설계기술과 설계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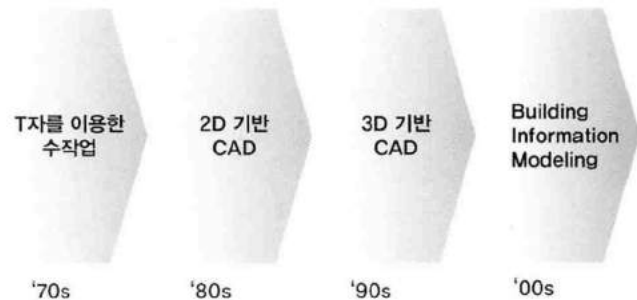
설계기술이란 유형적기술과 무형적기술이 상호 결합된 종합적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1).



〈그림 1〉 설계기술의 정의: 설계기술이란 유형적기술(프로세스별 생산기술)과 무형적기술(창의성, 전문성)이 종합된 기술이다

- 유형적 기술: 건축설계프로세스 즉,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에서 요구되는 결과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
- 무형적 기술: 문화,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며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기술

설계자는 설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설계 결과물을 전통적인 관례나 지침에 적합하게 생산하며, 이러한 결과물은 건축설계도구의 발전과 더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생산되어졌다. 설계도구는 티자, 삼각자 등을 사용하던 수작업도구에서 80년대 컴퓨터를 이용한 이차원 기반 CAD의 도입, 90년대 삼차원CAD 그리고 현재 BIM 등으로 진화되고 있다(그림2).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설계사무소에서 이차원 기반 캐드 드래프팅 도구를 이용하여 설계결과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500년 전부터 수작업으로 진행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설계작업방식의 고착화는 건



〈그림 2〉 설계도구의 진화: 설계도구가 진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현재 2D 기반 CAD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축물이 대형화, 복잡화 되는 현재의 추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건축물의 대형화, 복잡화에 따른 설계단계별, 관련 분야별 방대한 양의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분야별 정보의 공유 및 표현에 있어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설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설계프로세스는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 설계프로세스는 설계업무 흐름 이외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현실적 제약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가 단계별 결과물 도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팀장에 따라 업무의 흐름이 달라지며 설계변경 시 반복적인 작업이 많아 비효율적인 업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건축은 많은 분야에 속한 업무 주체간의 협업 작업이 필수적이며 각 단계, 분야 간의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협업이 설계프로세스 중 최종 단계에 집중되어 완성단계에 있는 설계를 수정,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설계자들이 보는 설계품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

설계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에 건축설계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필자는 과감하게 건축물이 대형화, 복잡화되는 추세와 비교하여 현재 설계기술은 만족할 만한 설계의 질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음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건축설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계품질 저하 요인에 대해, 설계작업과정, 설계도구, 협업, 의사소통, 기타 등의 5개 항목과 관련된 질의서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설계작업과정
 -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 디테일에 관련된 도면 작성이 어렵다

-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 효율적인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어렵다

● 설계도구

-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다
- 도면 작성이 어렵다
- 시스템에 대한 적응도가 낮다

●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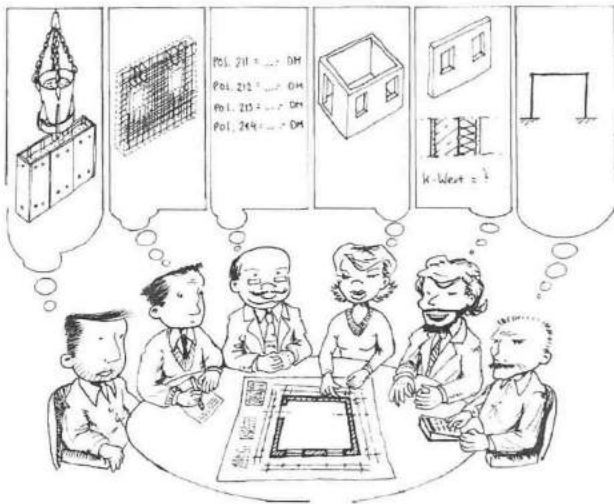
- 적절하며 효율적인 협업이 불가능하다
- 협업문화가 결여되어 있다
- 협업시스템이 부재되어 있다

● 의사소통

- 수직적인 의사소통시스템에 의해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발생한다
- 건축주, 발주처의 횡포에 의해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다
-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 구성원의 능력차에 의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 기타

- 적정 설계비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 장인정신의 건축문화가 상실되고 있으며 설계시장에 체계가 없다
- 건축주의 횡포
- 자재 표준화의 필요성



〈그림 3〉 기존설계과정의 문제점 : 협업의 어려움
/Source : Richard Junge

건축주가 임의로 정한 시간동안에 만족할 만한 품질의 설계결과물을 생산하기에 기존의 설계프로세스는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복잡 다양하면서도 유일한 건축물의 설계를 위해

서는 각 단계별로 생산되어 지는 결과물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을 위한 매개체로써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업 및 의사소통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건축주나 발주처가 설계자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적절하게 협의를 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번거로운 요구들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설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정밀한 설계프로세스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으며, 또한 설계프로세스 동안 필요로 하는 타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주도하는 설계자의 역할을 인식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물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함으로써 기존의 설계프로세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프로세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합설계프로세스 개념의 출현

최근 AIA에서는 건물의 전생명주기 동안에 속한 각 분야의 원활한 협업과 정보의 통합화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설계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설계분야와 타 분야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주고 시공 시 정보 부족, 비용과 시간의 손실, 질 저하의 문제를 개선시켜줄 수 있으며,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통합설계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년 AIA의 보고서에서 Norman Strong은 '통합설계프로세스의 핵심은 완벽한 협업 및 고도의 통합화'라 하였다. 이 협업팀은 건물의 전 생명주기 관련자 전부로 구성되어야 하며 팀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의 투자, 진정한 협업, 정보의 공개, 손실과 이익의 공유, 가치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기술적 능력 및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구성으로 나온 결과는 효율적인 설계, 시공, 운용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IA California Council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통합설계프로세스는 모든 단계에서 최적의 효과를 내고 불필요한 업무를 감소시키며, 모든 참가자들의 재능과 통찰력이 완벽한 협업을 가능하게 하며 프로세스에 속한 참여자, 시스템, 비즈니스 체계와 업무를 통합하는 프로젝트 전달 접근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설계프로세스란 설계분야와 타분야 전문가와의 완벽한 협업과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정보의 통합화이며, 건물의 전생명주기 동안의 비용과 시간의 손실 및 질 저하의 문제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 및 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은 대단히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서는 정보의 일관성이 필요하게 된다. 설계자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시설계 단계까지 단절되어 있지 않은 일관된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필요한 단계에서 효율적인 협업이 발생하고 그 결과는 다시 설계에 반영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지원하는 패러다임으로써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건축산업 전반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하 BIM) 개념

현재 BIM은 Building Information Model의 명사적 의미,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프로세스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표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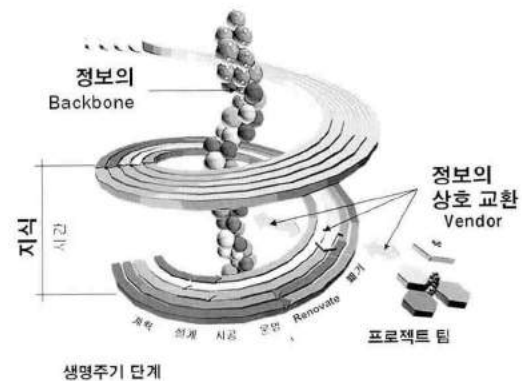
표1. BIM 개념: 기관 및 벤더사의 정의

	용어	정 의
NIBS (2007)	Model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특성에 대한 디지털 표현
	Modeling	이해관계자들의 규칙을 지지하고 반영한 정보의 삽입, 추출, 업데이트 또는 수정하는 시설의 각각의 단계 또는 각각 다른 이해관계자에 의한 협업
GSA (2006)	Model	시설에 대해 많은 데이터가 사용된 개체 기반의 지능적이고 파라메트릭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표현
	Modeling	건물 디자인을 문서화하기 위함과 새로운 자본 시설 혹은 재자본시설(현대화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시연할 목적으로 다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 모델의 사용과 개발.
Victor O. Schinnerer & Company Inc	Model	디자인 프로세스와 시뮬레이션에 의한 디지털 3D정보와 발생된 데이터를 위한 저장고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디자인, 건축 정보, 건설교육,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것.
	Modeling	디자인을 창조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건설되어지는 방법의 변화를 말하며, 종이를 중심으로 한 정보에서 디지털 정보로의 움직임
Graphisoft	Modeling	기하학적 정보와 비기하학적 정보를 함께 포함하는 하나의 저장소
Bentley	Modeling	연합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건물의 전체 생명주기에 관련된 기하학적이며 비기하학적인 양면에 대한 모델링
Autodesk	Modeling	건물설계와 시공에 있어 건물 프로젝트에 관한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며 계산가능한 정보의 생성과 사용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건물설계와 문서화의 방법론

미국 조달청 (GSA²⁾: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Victor O. Schinnerer & Company Inc³⁾, NIBS(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s)⁴⁾에서는 BIM을 Model과 Modeling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 세 곳에서의 Model은 저장고로서의 역할을 감

조하고 있으며, Modeling에 대한 정의는 다르게 나타났다. 2005년 4월 미국 조지아텍에서 세계 건설업 관련 주요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미국 조달청인 GSA, AIA 및 주요 설계사무실 및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첫 번째 열린 BIM컨퍼런스에서는 BIM을 단순히 하나의 정보모델이 아닌 건물 수명주기 동안 생성되는 정보를 교환하고, 재사용하고, 관리하는 전 과정(Process)으로 보는 관점에 동의하였다.

BIM이란, 건물의 라이프사이클에 관여되며 이 과정동안에 발생하는 정보를 생산, 재사용, 수정, 추출, 축적하는 효율적인 협업지원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⁵⁾(그림 4).BIM은 통합설계프로세스의 기반이 되는 패러다임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BIM적용 설계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들을 찾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건설사 및 대형 건축사사무소를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4)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개념: 통합설계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협업지원 패러다임 / AEdgar 2006

마무리

설계품질에 대한 문제는 건축물이 복잡화, 대형화 되어가면서 더욱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설계자의 입장에서 설계비와 연관하여 설계품질을 논할 수도 있겠으나 필자는 보다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설계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를 건축설계의 근본적인 목표에서 찾기를 바란다.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대의 속에서 기존의 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의를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계프로세스를 바라보아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BIM기반 설계프로세스는 건축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설계자, 시공자, 운영관리자, 건축주 및 사용자 모두에게 질 좋은 건축물을 제공할 것이다. ■

2) GSA 외, GSA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Guide Series (01-GSA BIM Guide Overview), 2006.11

3) Victor O. Schinnerer & Company Inc., Guidelines for Improving Practice, <http://www.aia.org>, 2004

4) National BIM Standard Version 1.0 - Part 1: Overview, Principles, and Methodology by NIBS

5) 전한중 (2007, 10). 2007 BIM 심포지엄, 일간건설신문사,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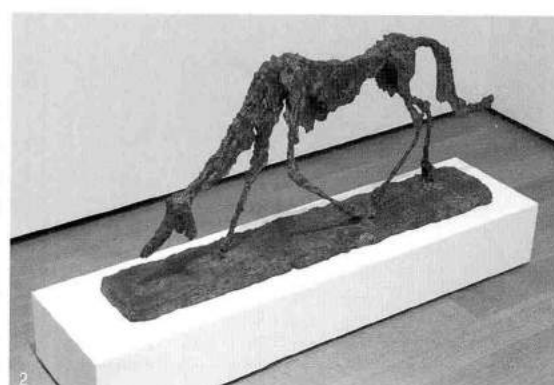
민 윤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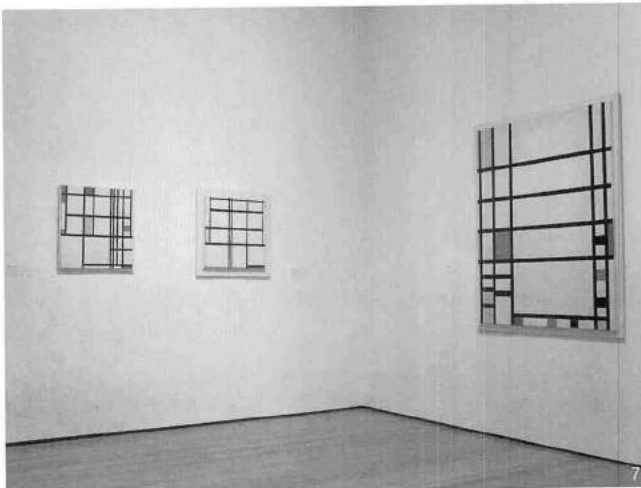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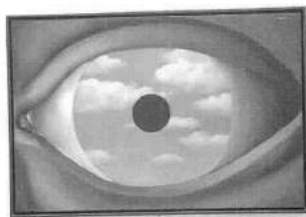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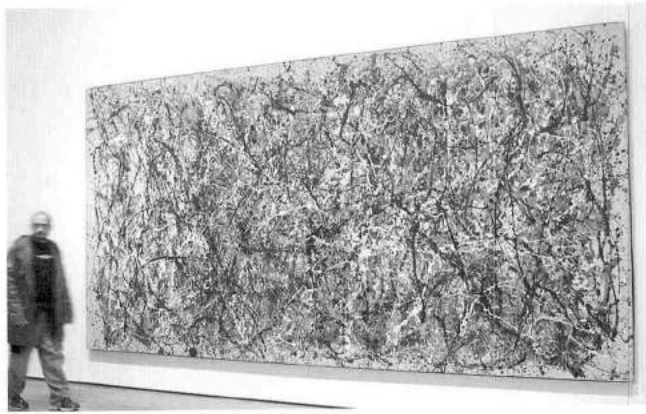
정회원, (주)건축사사무소 신도시21, 전주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by Min,Yoon-ki, KIRA

미국 뉴욕 건축기행(3)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New York

기억하고 있는 여러 편의 영화에서 등장하는 센트럴파크(Central Park) 그리고 그 주변으로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인 맨하탄 업타운의 건축기행은 건축물을 둘러보는 기쁨과 그 안의 미술품들에 대한 감상의 즐거움 두 가지를 다 채울 수 있었다. 특히 현상설계를 통해 당선된 Yoshino Taniguchi의 NYMoMA는 그런 기대를 충분히 채워주었다. 모네, 세잔, 고흐, 고갱, 피카소, 칸딘스키, 몬드리안, 마티스, 미로, 폴록, 클림트, 워홀, 마그리트, 달리, 말레비치, 그리고 무어와 자코메티까지 반나절을 넘게 Taniguchi의 절제된 공간 안에서 그들의 작품을 즐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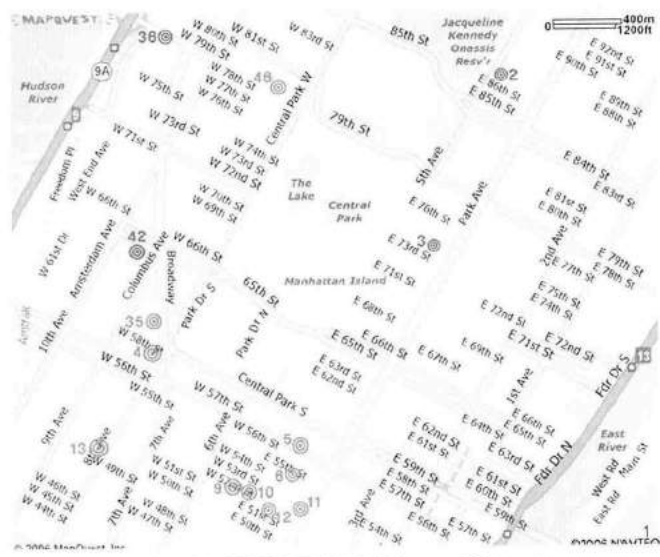


1. 모네 2. 자코메티 3. 폴록 4. 마그리트 5. 클림트 6. 피카소 7. 몬드리안

맨하탄 업타운(Uptown) 지역의 건축물 목차

- 46. Rose Center for Earth & Space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77th St. & 81st St. at Columbus Ave. New York NY
- 35. American Bible Society, 61st St. Broadway New York NY
- 4. Time Warner Center, 10 Columbus Circle New York NY

- 13. Hearst Magazine Building, 951-969 Eighth Ave. at W47th St. New York NY
- 11. Seagram Building, 375 Park Ave. (at 53rd St.) New York NY
- 5. LVMH Tower, 19 E57th St. between Madison and Fifth Ave. New York NY
- 6. AT&T Corporate Headquarters (sold to the Sony & renamed Sony Plaza) New York NY
- 9. Museum of Modern Art, 11 W53rd St. between 5th & 6th Ave. New York NY 10019-5497
- 10. American Folk Art Museum, 49 W53rd St. New York NY
- 12. Austrian Cultural Forum, 11 E52nd St. New York NY 10022
- 2. Guggenheim Museum, 1071 Fifth Ave. (at 88th St.) New York NY (예전에 방문)
- 3.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945 Madison Ave. (at 75th St.) New York NY (미방문)
- 1. Alfred Lerner Hall Student Center,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Y (미방문)
- 42. Lincoln Center (미방문)
- 36. The Calhoun School Expansion, 433 West End Ave. New York NY 10024 (미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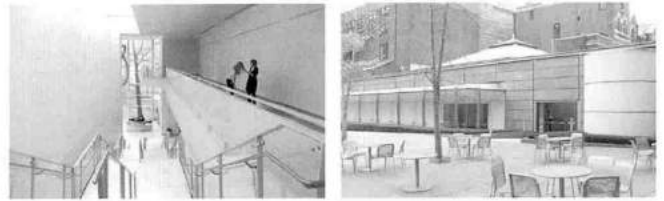
1. 업타운 확대지도 2. 업타운 지하철도지도

46.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 by Polshek & Partnership

Manhattan가로 모퉁이의 조그만 공원, 오래된 나무들 그리고 옛 벽돌건물과 묘하게 어울린 이 Museum은 그로 인해 형태적인 독특함으로 쉽게 찾을 것 같은 선입관을 깨버리듯 찾기가 쉽지 않았다. 거대한 Sphere가 담긴 glass box를 제외하고는 기존건물과 아주 잘 어울린 작품이었다. Museum을 위한 sphere와 유리 box의 필요성은 이해하겠지만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었던 것 같다. 공원을 따라 나 있는 참이 넓은 완만한 계단으로 올라서면 작은 광장이 나타난다. 광장을 따라 선형 mass가 이어져 있었고 한 칸에 나지막한 출입구가 자리하고 있었다. 다른 곳에 분명히 주출입구가 있으리라는 예상이 가능했고 내부로 들어가 아래 로비로 내려가 보니 주출입구를 찾을 수 있었다.



주출입구로 들어오면 2개 층이 open된 커다란 홀에 skeleton으로 된 sphere가 걸려있고 원형의 안내 desk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홀로 고개를 내민 2층의 발코니로 시선이 가고 그 밑으로 위층 museum으로 향하는 일자 계단이 인지된다. 이 계단을 올라가 지나온 동선을 반추해 보면 glass 커튼월로 마감된 입구 홀 너머로 지나온 공원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그리고 전면으로는 긴 복도 그리고 복도의 glass 바깥으로 보이는 main 공간인 glass box와 거대한



sphere로 향하게 된다. 내부 공간의 동선은 공간의 시나리오를 충분히 써가며 이루어지고 있었다. 바깥으로 나와 보니 void면의 glass마감과 solid면의 초록색 산화동판이 잘 어울려 보였다.

주소 : 77th St. & 81st St. at Cloumbus Ave, New York NY/
준공년도 : 2002

35. American Bible Society - by Fox & Fowle

PC concrete panel로 마감된 Modernism의 전형적인 기존 건물 진입부를 개선시켜야 된다는 client의 요구에 의해 Manhattan에 최근 skyscraper를 많이 설계한 Fox & Fowle의 단순하고 정갈한 design의 유리 pavilion과 canopy에 의해 pedestrian에게 건물의 새로운 얼굴을 제시해 주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동선을 끄는 이 pavilion에 의해 건물은 한층 up grade되었으며, 도로에서 자연스런 동선으로 건물을 진입할 수 있었다. 다행히 기존건물 자체가 도로에서 많이 set back 되어 있었고, 입구 pavilion이 set back된 공간을 잘 채워주고 있었으며, 1층에는 각종 bible를 판매하는 서점과 museum이 자리하고 있었고 유리 pavilion에 의해 많은 빛이 유입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주소 : 61st St, Broadway, New York NY
준공년도 : 1998



4. Time Warner Center – by SOM

8번가를 따라 Central Park쪽으로 향하면 Columbus Circle이 나타나고 그 Circle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저층부를 가진 skyscraper가 나타난다. 저층부를 제외한 모든 facade는 glass마감으로 반짝이며 날카롭게 우뚝 솟아있다. 지하철 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저층부의 거대한 shopping mall로 인해 건물의 전면과 로비로 향하는 동선 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입구를 지나 자연스럽게 지하 food court로 가서 비싼 스시로 점심을 해결했다. Ada Louis Huxtable의 비평에 의하면 Manhattan Skyscraper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했다.



지하까지 5개 층이 open되어 있는 입구 lobby로 들어서면 중앙에는 지하로 향하는 esc.가 있고, 양쪽으로는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esc.가 자리하고 있다. 4층 높이의 유리 커튼월에서 들어오는 빛에 의해 로비는 충분히 밝았으며 open된 위층으로 가서 유리커튼월면으로 밖을 바라보니 Columbus동상과 Central Park를 담고 있는 Columbus Circle에 잘 대응하고 있는 저층부임을 느낄 수 있었다. Detail의 정교함이 돋보였으며 외부와 내부에서 사용된 glass의 다양한 마감방법도 보였다. 내부 interior에서도 공사비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고, 다음 날 Hudson강 건너편에서 바라본 Manhattan의 야경에서도 두 개의 tower가 북쪽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911 이전에는 남쪽에 위치한 WTC의 두 tower가 반짝이고 있었는데...

주소 : 10 Columbus Circle, New York NY / 준공년도 : 2003

13. Hearst Magazine Building – by Sir Norman Foster

Times Square를 벗어나 8번가를 따라 북쪽을 바라보노라니 햇빛에 반짝이는 Manhattan의 다른 건물과는 전혀 다른 어휘로 design되어 독특한 facade를 가진 건물이 솟아 있었다. Geodesic Dome의 stainless steel 구조체(diagrid)의 사선마감과 그 기하학적인 형태가 건물의 역동성을 한층 더 느끼게 해주는 건물이었다. Landmark로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저층부는 옛 건물의 facade를 그대로 보존했으며, 그 안을 다 파내고 새로운 구조시스템의 도입으로 42층의 건물이 들어선 것이다. 허나 저층부의 건물 facade가 과연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저층부의 facade를 보존하라는 Landmark Committee의 강제성이 없었다면 이러한 건물이 생겨났을까하는 생각도 스쳐갔다.

건물내부로 들어가 본 순간 회사의 위용을 드러내고픈 건축주의 의도와 건축사의 사려깊은 디자인이 돋보였다. 거대한 사선기둥들이 외주부에 둘러있어 tower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었고, 그 내부는 무주공간으로 상당한 높이의 atrium lobby를 이루고 있었으며, lobby 내부디자인에서도 사선요소는 적용되어 수개 층을 한 번에 올라가도록 에스컬레이터를 사선으로 배치시켜 놓았고 에스컬레이터 옆으로는 cascade를 두어 조용한 물소리와 잔잔한 그 경관으로 거리의 소음과 분주함을 잊게 하고 있었다. 사선 esc.를 올라가면 넓은

lounge가 나타나게 되었고, 4면이 모두 open되어 있어 저층부의 lobby와 그 위의 lounge 모두 밝은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고, cascade의 수면에 비치는 빛의 효과가 내부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다. 건축주인 Hearst사는 미국내에서 유력한 언론사로서 약 5,000억을 들여 New York시에 산재해있는 모든 사무실을 이 건물로 옮겼으며, 최근 British Museum으로 renovation design에 지명도가 있는 Sir Norman Foster에게 설계를 의뢰했고, Foster로서는 New York의 첫번째 작품이다.

주소 : 951-969 8th Ave, at 47th St, New York NY /
준공년도 : 2004



11. Seagram Building - by Mies van de Rohe

'서울건축'에 근무할 때 칭찬이 자자했던 이 건물은 꼭 보고싶은 건물이었다. Manhattan을 다니는 동안 수많은 Mies풍의 High rise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이 Seagram Building을 보며 평면과 입면에서 느낄 수 있는 비례감에서 예전의 극찬에 대해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벌써 50년이 다된 건물이었음에도 주변의 20년, 30년 전의 건물보다 훨씬 상태가 양호했으며,

late modern풍의 어설픈 입면이나, post modern풍의 장식적 입면보다는 오히려 classical함을 느낄 수 있었다.

주소 : 375 Park Ave. (at 53rd St.) New York NY /
준공년도 : 1958



5. LVMH Tower - by Christian de Portzamparc

이 건물의 바로 옆 건물을 보면 New York manhattan의 건축지침에 관한 hint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street level daylight zoning에 관한 지침으로서 보도에 면해 일정 높이까지 올라가면 뒤로 set back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옆 건물처럼 계단식으로 set back시켜진 건물을 흔히 wedding cake이라고 부른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건물의 set back에 대한 아이디어는 상당히 참신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었으며, glass facade의 보석처럼 다듬어진 반짝이는 면들은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ground floor의 진입부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보석같은 면을 3층 바닥에서 자른 후 만들어 놓아 진입부가 분절된 것은 자연스럽지 못했다. Louis Vuitton과 Moet Hennessy의 New York 본사건물로서 facade design에서 일반인에게 쉽게 상상이 가는 보석의 metaphor는 잘 차용했으나 glass면의 다양한 각도로 인한 빛물의 오염에 대한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었다.

주소 : 19 57th St, Madison & Fifth Ave, New York NY
준공년도 : 1999





6. Sony Building - by Philip Johnson

멀리서 본 Sony Bldg.은 mass와 최상부 Chippendale식 가구 metaphor(혹자는 Rolls Royce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그릴이라 함.)의 top이 주변을 압도하고 있었다. 결국 건축사가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Manhattan가로에서 충분히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post modernism의 결정판이라 할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pedestrian scale에서 본 건물의 저층부였다. 지나가는 사람조차 왜소하게 만드는 저층부 입구의 arch recess부분 그리고 좌 청통 우백호처럼 버티고 있는 3개씩의 키 높은 void부분들까지 거인 나라의 건물에 온 느낌(마치 이 건물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Time지 표지에 실린 건물의 Model을 들고 서 있던 Philip Johnson의 모습과는 반대로)으로 건물 자체에 대한 facade design scale에서는 조화 있었을지 몰라도 human scale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점이 아쉬웠다.

주소 : 55th St. New York NY / 준공년도 : 1978 ~ 1984



9. NYMoMA - by Yoshino Taniguchi

53번가 쪽으로 Folk Art Museum을 찾으러 가는 중 먼저 만난 것이 NYMoMA였다. 허나 53번가 거리에서의 MoMA는 그냥 평범하고 단정한 건물이었다. 단지 입구를 인지시키려는 거대한 캐노피와 입구를 통해 52번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를 둘러보기로 마음먹고 Folk Art Museum을 지나 52번가 쪽으로 돌아보았다. 절제된 Taniguchi의 facade가 나타났으며, 이를 따라 가다보니 mass가 비어있는 부분이 보였고 fence가 비어있는 공간인 sculpture garden의 시선을 차단하고 있었다. Sculpture Garden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mass가 garden쪽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으며, 둘의 입면 구성은 거의 유사했고 1층 부분의 입면재료는 상부와 분절되어 fence와 같은 높이로, 같은 corrugate panel재료로 마감되어 있었다. 5번가 쪽의 mass에는 Museum의 입구가 6번가 쪽의 mass에는 Education & Research Center의 입구가 Corrugate panel로 마감된 부분에 recess를 이루고 자리하고 있었다.

Museum입구로 들어가니 아까 53번가에서 바라보던 입구가 건너편으로 보이고 두 거리의 단차로 인해 로비는 서너 계단 차이나는 두 개의 level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상부로 이어지는 거대한 opening이 눈에 들어왔으며, 공간의 깊이에도 불구하고 최상층까지 연결된 수직 open공간으로 들어오는 빛에 의해 내부는 밝게 빛나고 있었고, 좌측으로는 거리에서 fence사이로 보이던 sculpture garden이 눈에 들어왔다. 아마도 53번가를 main entrance로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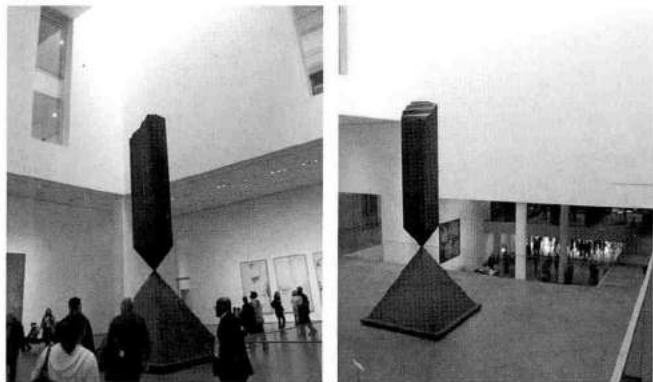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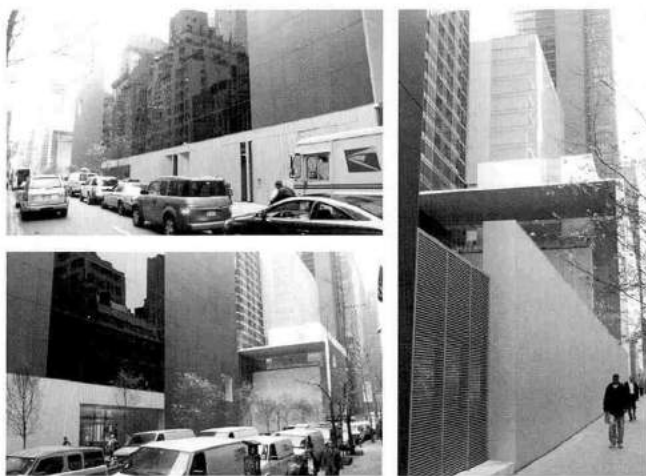
하고 design한 듯 ticket booth와 main 안내소가 53번가 동선을 따라 만들어졌다. 하지만 52번가로 들어온 넓게 펼쳐진 공간의 크기 때문인지 큰 불편 없이 ticket을 구매하고 동선을 시작했다. 시작동선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은 sculpture garden이었고, 전시목록과 전시장의 구성도 확인하려고 sculpture garden으로 향했다. 52번가 건너편의 manhattan의 옛 건물과 조각들 그리고 정원수들이 어우러져 우수한 경관을 이루고 있었으며, 거리의 소음은 fence에 의해 거의 들려오지 않았다. 곳곳에 조각들과 같이 배치된 철제 의자에 걸터앉아 보니 museum mass의 facade가 눈에 들어왔고, 최상층의 전시동선에서 esc.로 움직이는 관람객들이 보였으며, 정원의 구성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건축사가 일본인이어서 인공적인 연못 그리고 다리 등 아가자기한 일본식 정원의 분위기였다.

다시 들어가 원래는 elev.로 6층으로 올라가 동선을 시작하는 것이



었는데 공간을 좀 더 세밀히 보고자 esc.로 6층까지 올라갔다. 올라가는 동선 상에서 다시 느낀 것이지만 매층 각 전시공간의 orientation이 분명했다. 맨 마지막 esc.로 6층으로 올라가려는 동선 상에서 방금 전 sculpture garden에서 보이던 창을 확인하며 바깥의 필자가 앉았던 자리를 반추할 수 있었고, 책과 이미지로만 보던, 보고 싶던 명화들이 너무 많아 가슴이 벅차올랐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피카소의 아비뇽의 아가씨들, 반 고흐의 starry night, 세잔의 사과가 있는 정물, 쇠라, 마티스, 말레비치, 폴록, 칸딘스키, 몬드리안, 클림트, 마그리트, 자코메티, 달리, 후앙 미로, 앤디워홀 등등 장장 3시간의 그림여행을 마치고, 다시 건축여행을 시작했다. 너무도 정갈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평면은 계속 이어졌고, 이러한 관람객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 건축사의 고민은 아마도 컸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인 Yoshino Taniguchi의 표현을 빌리자면 “찾잔은 단순하며 그 표현에 있어 차분하다. 그러나 차가 부어지면 찾잔은 새로운 사물이 된다. 비어 있을 때는 중요한 사물이 아니지만 채워지면 온도, 색 그리고 향기와 맛에 의해 중요한 사물이 된다.”

주소 : 11 W53rd St. between 5th & 6th Avenue, New York NY
준공년도 : 2005





10. American Folk Art Museum - by Tod Williams & Billie Tsien

NYMoMA의 바로 곁에 위치하고 있었고, Manhattan에서는 흔치 않은 text로서 아마도 Guggenheim이 Manhattan에서 각형 건물들 사이에서 원형 역 cone으로 Landmark를 이루었다면, 이 건물은 그 크기와 재료에서 충분히 그러고 있었다. 건물 내에서 사진촬영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표를 구입하고 카메라는 주머니에 넣고 가방을 맡긴 후 몰래 내부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건물의 전면 폭이 좁은 단점을 극복하고 시간여행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주진입구는 숨겨져 있었다. 외벽재료는 Tombasil이라는 metal panel로서 museum의 성격과 잘 어울리는 고풍스러운 멋을 느끼게 해주었고, 상층부의 bridge가 한눈에 들어오는 기다란 로비에 안내 desk를 거쳐 elev.로 6층으로 올라가서 공간여행을 하게 되었다. 6층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상부로 뚫린 천창과 하부로 길게 나있는 수직 opening이었다. 전시장 내부계단 혹은 뒷면 모서리의 main계단을 따라 동선을 진행하며 상부의 천창은 계속 눈에 들어왔고, 단면 opening에 의해 전시동선 속에서 본인의 위치는 파악하기 쉬웠고 공간의 혼란스러움은 있었으나, 좁은 공간에 대한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시를 마친 후 둘러본 museum shop 역시 좁고 긴 형태로 'after you'를 자주 외치며 shopping을 했고, shop을 나오자 좁은 pocket 공간이 manhattan가로로 나갈 준비를 하게 만들었다.

주소 : 49 W53rd St, New York NY / 준공년도 : 2002



12. Austrian Cultural Forum - by Atelier Raimund Abraham

너무도 강렬한 이미지의 감각적인 facade design이었다. 상층부로 올라가면서 기울어진 전면은 칼로 베어낸 듯 했으며 높이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건축사의 의도가 엿보이는 첨가된 매스와 layer 그리고 선형장식들이 잘 어울려 있었다. 건물의 전면 폭(7.5m)을 다 차지하고 있는 캐노피를 통해 입구로 들어서려면 위에서 이야기한 facade가 떨어질 듯이 보인다. 좁은 폭의 입구로비로 들어서면 안내desk, elev. 홀 그리고 뒤편으로 계단이 보인다. 마침 Rem Koolhaas의 건축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그의 건축세계를 다시 볼 수 있었다. 내부 마감재료 중 눈에 띈 것은 stainless steel의 사용이었다. 계단 핸드레일과 elev. shaft벽면에 사용되었는데 같이 사용된 강화유리와 어울려 도시적인 분위기의 내부를 보여주고 있었다. 좁은 폭에서 계단 주위의 opening이 elev. shaft의 둥근 벽면과 조화를 이루며 공간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었고, 내부마감의 상세가 훌륭했다. 圖

주소 : 11 E52nd St, New York NY / 준공년도 : 2002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 제10회 이사회

2007년도 제10회 이사회가 지난 10월 16일 오전 11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경조비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설계경기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협찬금 처리에 관한 건, 법무법인 선정에 따른 계약조건 조정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경조비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하되, 정관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설계경기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설계경기운영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위원장 선임은 회장단에 위임함.
-위원선임과 분과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협찬금 처리에 관한 건
-원안대로 승인 함.
- 제4호의안 : 법무법인 선정에 따른 계약조건 조정에 관한 건
-원안대로 승인 함.

▲기타사항

- 강희달 부회장이 제안한 건축관련 언론상 신설에 공감하며, 세부사항은 추후 검토하기로 함.
- 건축문화신문 편집국장의 이사회 참관은 필요시에만 허용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7회 법제위원회

제7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법령 해설집 발간사업 계획에 관한 건, 난연자재 확인에 대한 경찰청 수사와 관련한 감리자업무 범위 및 책임에 관한 건, 간담회의 정례화 및 주제선정에 관한 건, 전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건,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법령 해설집 발간사업 계획에 관한 건
-건축사협회의 역할이나 위상을 위하여도 '건축법령집 발간사업'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으로 협의함.
- 제2호 : 난연자재 확인에 대한 경찰청 수사와 관련한 감리자업무 범위 및 책임에 관한 건
-감리업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제3호 : 간담회의 정례화 및 주제선정에 관한 건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장소는 3층 국제회의실을 정기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제4호 : 전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건
-전 회원을 참여할 수 방안을 모색하고, 회원 모두가 연구 노력하는 전문성을 부여하여 협회의 역할이나 건축사의 위상 제고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제5호 : 기타사항
-건축사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안으로 협회는 법적 및 행정적 지원을 긴급하고도 정밀히 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 회복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이에 법제위원회는 건축물관련 저작협의회를 설치 구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 제9회 법제소위원회(건축관련 발간사업)

제9회 법제소위원회(건축관련 발간사업) 회의가 지난 10월 2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제작사양 증·감에 관한 건,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의 산정에 관한 해설집 개정판 출판에 관한 건, 건축법령 해설집 발간사업계획(안)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제작사양 증감에 관한 건
-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제작사양 증감에 관하여 논의 함.
- 제2호 :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의 산정에 관한 해설집 개정판(용어정리 포함)을 출판에 대해 논의 함
- 제3호 : 건축법령 해설집 발간사업계획(안)에 관한 건
- 건축법령 해설집 발간사업계획(안)에 대해 논의함

■ 제9회 법제소위원회(감리제도)

제9회 법제소위원회(감리제도) 회의가 지난 10월 2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자재 감리업무에 관한 건, 민간전문가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자재 감리업무에 관한 건
- 건설교통부로부터 의견조회한 건축자재 감리업무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제2호 : 민간전문가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
-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전문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보완하여 차기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기타사항

- 경관(APT)심의제도 관련 토론회를 본협회 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시건축사회가 주관하는 계획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10회 법제소위원회(감리제도)

제10회 법제소위원회(감리제도) 회의가 지난 10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법 일부개정 내용에 관한 건, 민간전문가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요청에 관한 건,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계획에 관한 건,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건, 보고사항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법 일부개정 내용에 관한 건
- 건축법 일부개정 내용에 대해 논의 함
- 제2호 : 민간전문가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
- 민간전문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함
- 제3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요청에 관한 건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84조 및 동법시행령제94조와 건축법제46조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다르게 해석(건축물의 대지가 2개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 건축법 - 그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적용, 국계법-330m2이상 대지별 각각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김규섭 건축사(건의자)에게 의견을 들어 본 후 협회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계획에 관한 건
- 건축심의 제도개선(성남갑 아파트관련) 관련 토론회를 11월중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추진기로 함.
- 5년제 건축학과 관련한 토론회는 해당부서에 12월 중순 건축학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관련공문을 각 대학교에 보내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이를 추진기로 함.
- 제5호 :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

인에 관한 건.

-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논의 함
- 제6호 : 보고사항에 관한 건
- 건축자재 감리업무에 관한 사항

■ 제8회 법제소위원회(규정 및 회칙)

제8회 법제소위원회(규정 및 회칙) 회의가 지난 10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기술자회비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건설기술자회비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 경력(변경)신고 후 5년 이상 경력변경신고, 연회비납부, 제증명발급 등의 일체 행위가 없는 경우 별도로 관리하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며, 법리 및 법제계에 맞지 않는 문구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제2호 :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 다음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5회 교류협력위원회

제5회 교류협력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0일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건축문화 교류관련 제안사항의 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의 건, 건축사 등산동호회 예산지원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남북건축문화 교류관련 제안사항의 건
- 남북건축문화 교류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을 수렴기로 협의함.
- 제2호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의 건
- 원안대로 협의 함.

- 제3호 : 건축사 등산동호회 예산지원에 관한 건
- 미술동호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협의함.

■ 제8회 국제위원회

제8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1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1회 한중일건축사협회 개최에 관한 건, 몽골건축사협회 초청에 관한 건, 국제위원회 활동 강화 방안에 관한 건, 해외 주요 건축단체 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건, ACA-13 개최 준비에 관한 건, 2008년도 국제사업비 예산에 관한 건,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제11회 한중일건축사협회 개최에 관한 건
- 각 파트별 담당자를 정함
- 제2호 : 몽골건축사협회 초청에 관한 건
- 몽골건축사협회 대표단 방문 시 업무분장에 관해 몽골담당인 오근석위원이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음.
- 사무국에서 회장님이 회의에 참석을 원하는 대표단의 명단을 먼저 확보한 후 국제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가능인원을 숙소를 검토하여 보고하고 사무국에서 오근석 위원에게 일정별 국제위원 담당을 지정해주도록 주제 및 일정을 송부하고 요청하기로 함.
- 제3호 : 국제위원회 활동 강화 방안에 관한 건
- 이미 결정한 대로 교수위원들을 전문위원으로 전환하고 남은 공석 3석 중 김형수 건축사와 이옥화 건축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남은 한 자리에 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축사 추천을 요함
- 젊은 건축사 중 협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력있는 건축사들의 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명단을 작성하기로 함
- 신임위원들은 총무이사과 협의된 대로 3개월 후 위원 교체 시 위촉하기로 함
- 제4호 : 해외 주요 건축단체 교류협력 추진

에 관한 건

-AIA/NCARB: 지난 UIA PPC 회의 시 미국 대표단과 사전 협의에 의해 가능성을 타진함. 추후 건축가 협회와 동일하게 업무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함. 이 업무는 심재호이사가 담당하여 회장단의 미국방문 협의 일정 등을 계획하기로 함

-네덜란드와의 교류는 우선 NAI(네덜란드 건축문화원)와 베를라헤 인스티튜트의 학장이 네덜란드의 건축정책을 소개하는 글을 건축사지에 연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는 네덜란드에 있는 한국유학생과 신춘규 위원장이 업무 추진을 하고, 추후 건축문화원과의 업무협정 추진에 대해선 심이사와 협의 진행할 예정임

- 제5호 : ACA-13 개최 준비에 관한 건
- 13회 아시아건축사대회(ACA)의 KEY-NOTE SPEAKER로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모시기로 하였기에 회장님, 또는 류춘수 부회장을 통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접촉하는 방법을 모색중임
- 학생 점보리의 컨비니언 정재욱교수가 전반적인 준비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강정삼위원이 집행위원장이 정태복 부산회장과 협의 하고 후속 업무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기로 함
- 제6호 : 2008년도 국제사업비 예산에 관한 건
- 내년의 국제사업비 예산을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제7호 : 기타사항
- 위원회에서 기 협의 된 해외건축통신원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을 기안하여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제6회 정책위원회

제6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7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계경기운영위원회에 관한 건, 회원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설계경기운영위원회에 관한 건
- 소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경기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안)을 검토한 후 확정키로 함.
- 제2호 : 회원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건
- 회원인증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함

■ 제19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집행위원회

제19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집행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막식 VIP참석인사 감사패 수여에 관한 건, 차년도 전시기획 방향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개막식 VIP참석인사 감사패 수여에 관한 건
- 전국건축사대회 및 타행사 감사패 수여자와 중복되므로 별도의 감사패 수여는 진행하지 않기로 함.
- 제2호 : 차년도 전시기획 방향에 관한 건
- 2007한국건축산업대전 정산종료후 최종결과보고서 작성시점에 맞추어 내년 전시방향에 대하여 11월 중순쯤 '집행위원회 워크샵'을 개최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20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집행위원회

제20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집행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1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한국건축산업대전 결과보고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에 관한 건,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7한국건축산업대전 결과보고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에 관한 건
- 전시회의 존속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기획에 대한 재정비가 절실하기에 11월 23일(금)~24일(토), 1박2일로

“전시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시회 문제점 및 차년도 전시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제2호 : 기타사항

-협회 홈페이지에 삼성전자 B2B사이트와 연결될 수 있는 배너광고 게재(건축산업대전 참여시 협의사항 임).

■ 제1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업무 추진일정 등에 관한 건,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안) 마련방안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예산·결산업무 추진일정 등에 관한 건
 - 업무 추진일정 계획(안) 협의
 - 자료분석 담당위원 선정 건
- 제2호 :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안) 마련방안에 관한 건
 -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안) 마련은 2007년도 자료를 기본틀로 하여 각 위원회와 시도건축사회, 사무처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안)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기본방향을 마련하기로 함.

■ 제2회 재경위원회

제2회 재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비비 사용 승인(안) 검토에 관한 건, 기금관리·운영에 관한 건, 정회원 간판제작 배부계획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예비비 사용 승인(안) 검토에 관한 건
 - 일반회계 ‘제세공과금 및 지도사업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하고, ‘위원회회비’는 ‘07. 11~12월분 위원회회비 예산소요를 파악한 후, 재경위원장의 검토를 받아 이사회에 상정토록 위임함.

토를 받아 이사회에 상정토록 위임함.

· 제2호 : 기금관리·운영에 관한 건

-협회 기금관리·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체토론을 한 후, 협회 기금의 투자수의 확대를 위한 투자방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들이 연구·검토하여 차기회의 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로 함.

· 제3호 : 정회원 간판제작 배부계획에 관한 건

-정회원 간판제작 배부계획은 '08년도 사업계획으로 검토하기로 하되, 건축사법 개정 및 건축기본법 제정, 건축3단체 통합 등의 진행추이를 고려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 제1회 남북건축문화교류협력위원회

제1회 남북건축문화교류협력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 건축문화 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건,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아시아건축사대회 남북 공동개최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남북 건축문화 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건
 - 남북 건축문화사업 추진계획은 위원들 각자가 좀 더 검토한 후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 남북 교류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우선 북한의 실체를 파악한 연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은예산으로 효과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제2호 :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남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 1인, 위원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필요시 참석을 요청하기로 함.
- 제3호 : 아시아건축사대회 남북 공동개최에 관한 건
 - 북한이 아카시아 회원국이 아닌 관계로 남북 공동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

므로 내년도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읍져버로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며, 접촉방법으로 다음 두가지 안을 검토하기로 함.

▲기타사항

- 내년도 사업예산을 아래와 같이 편성하여 재경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제1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제1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3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개정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에 관한 건,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정관개정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에 관한 건
 - 정관개정 기본방향 및 일정에 관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함.
 - 차기 회의시에는 정관개정에 도움이 될 만한 건축관련법(건축기본법 등)이나 국내외 타단체 정관(의사·변호사협회, 미국·일본건축관련단체 등)을 참고자료를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제2호 :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정관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 5인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제4회 정보위원회

제4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개정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에 관한 건,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요구에 관한 협의
 - 대회원 서비스 사업
 - SMS서비스 도입 : 주요정보(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민원처리 결과에 대

하여 문자메세지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회원서비스 질 향상과 궁극적으로 협회 업무 및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기로 함

-정보검색운영

· 제2호 : 홈페이지 모니터원 운영방안에 관한 협의

-홈페이지 활성화 및 건축문화발달을 위해 회원 스스로 사이버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것으로 판단됨

· 제3호 : 협회소식 실시간 제공에 관한 협의
-협회소식이나 현안문제들에 대한 진행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협회로서는 회원에게 제공해야할 당연한 서비스라고 판단됨

· 제4호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개선에 관한 협의

-지난 제3회 정보위원회('07.09.05)에서 협의되고 진행되었으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여 진행이 늦어졌고 금번 이사회(14회: 11.20 - 개최예정)에 협의안건으로 제출된 상태임

-홈페이지 개선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최상의 건축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회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할 것임

-빠른 진행을 위해 이사회 승인 전에 정보전산팀에서 제안요구서 작성, Time Schedule 작성, 디자이너 섭외(5명) 등을 동시 진행하기로 함

-메인 화면의 시안 검토는 ON-LINE을 통해 심사하기로 함.

제11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우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11차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를 개최했다.

1997년 1월 우리협회와 일본건축사협회연합회, 중국 전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가 교류협정을 체결한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시장개방에 대비한 건축사자격 상호 인정방안을 비롯한 각국의 건축계 주요현안과 상호 관심사항 등을 다루고 있으며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다.

우리협회 한명수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금까지는 각국의 건축관련제도 현황 파악과 실무차원의 정보교류였다면, 이제부터는 한 단계 뛰어 넘어 각국의 대표자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세계화시대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13일 개최된 제11차 회의에서 3국의 대표단은 '등록·면허 건축사의 상호 인정'이라는 주제 하에 외국 건축사들이 자국에서 실무하는 데에 필요한 관계법령과 규정, 그리고 APEC등록건축사 현황 등을 소개했다. 한국 대표단은 지난해 중국 항주에서 작성된 '건축

실무에 관한 각국의 제도와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현황표를 보완하여 발표했고, 중국 대표단은 외국 건축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국의 법과 제도 등을 발표했으며, 일본 대표단은 각국의 문화와 법·제도, 건축설계서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건축실무 핸드북' 발간을 제안하여 Working Group을 설치기로 합의했다.

오후시간에는 '도시 재개발'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젊은 건축사들이 작품 발표를 했으며, 관심 있는 건축사들도 참관했다. 한국은 '공간 구성(Cultivation)'과 '서울 지하철 9호선의 디자인 전략'을 발표했으며, 중국은 '주택 리모델링', '도시 브랜딩의 이상과 현실'을 발표했다. 그리고 일본은 '주거공동체로서의 디자인 도시', '미에현 이세(Ise)지역의 역사유적지', '정제(精製)된 건축'을 발표했다. 차기 회의는 내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미에현 이세(Ise)에서 개최기로 했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협력팀

02-581-5711~4

인천 청라지구 시티타워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



인천청라지구 시티타워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은 인천청라지구 중앙호수공원 내 약 90,000㎡의 대상지에 인천청라지구, 나아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약 450m 높이의 전망복합타워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계 건축사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건축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단 일반인의 경우 반드시 건축사와 공동응모하여야 한다. 참가자 등록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수상자 발표는 2008년 3월 28일(금)이고, 1등 1점에게는 7억원, 2등 1점에게 2억원, 3등 1점에 1억원, 각각 2점에 각 5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 문의 : 02-744-8050,

<http://www.citytower.org>

디자인코리아 2007 개최

'디자인코리아 2007' 행사는 세계 일류 디자인상품 비교전시를 통해 국민의 디자인마인드를 제고하고, 기업의 디자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디자인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디자인행사로서 2003년부터 매년 국내

와 해외(중국)에서 교차 개최되는 행사이며 국내 개최는 이번이 3번째이다.

주요행사로는, 16개국 18개 우수디자인 선정기관 참가예정인 '2007 월드베스트디자인교류展 : 세계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비교전시'와 '디자인경영 및 공공디자인'라는 주제로 열리는 '디자인코리아 2007 국제회의 : 국내외 디자인석학의 최신 디자인트렌드 소개' 행사, '대한민국디자인진흥대회 : 정부의 디자인산업육성정책' 발표 및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유공자 포상식 등이 개최된다.

〈행사 개요〉

- 기간 : '07. 11. 29(목) ~ 12. 6(목)
- 장소 : 서울 코엑스 대서양홀 및 그랜드볼룸
- 내용 : 전시, 국제회의, 디자인진흥대회 등 (세부내용 첨부파일참조)
- 참가문의 : 디자인코리아 사무국
031-788-7222~6

마곡 워터프론트 국제현상공모 전 개최

서울시에서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한강 권역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마곡 워터프론트를 매력있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의 폭넓은 아이디어를 얻고 설계안을 수립하고자 마곡 워터프론트 국제현상공모(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or the Magok Waterfront, Seoul)를 개최한다.

대상지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일대의 1,170,780㎡ 면적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2월 ~ 2011년 12월이며, 공사비는 980억원, 설계비 35억원으로 추정된다.

응모자격은 전 세계의 모든 개인이나 법인 혹은 단독으로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응모등록기간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현상공모 웹사이트(www.magokwaterfront.org)에 등록하면 된다.

-공모안접수 : 2008년 5월 26일 오전 9시~
2008년 6월 5일 오후 5시

-접수장소 : SH공사 마곡사업단(서울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 (우)135-988)이다.

-당선작발표 : 2008년 6월 23일

-상금

1등(당선작) : 1점 이내(설계권 부여)

2등 : 1점 이내(상금 USD100,000)

3등 : 2점 이내(상금 각 USD50,000)

가작 : 5점 이내(상금 각 USD10,000)

문의처 : 마곡개발과 02-3707-8556, 8586

동아전람-제19회 MBC 건축박람회 참여업체 모집



(주)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19회 동아전람-MBC 건축박람회'가 2008년 1월23일부터 1월27일까지 5일간 SETEC(지하철3호선 학여울역)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에게 신제품 홍보와 마케팅 장소를 제공하며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아전람 사이버 건축박람회와 병행해서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건축자재, 인테리어, 건축정보, 건축리노베이션, 조명, 조경, DIY 제품, 전원주택 및 펜션산업전으로 펼쳐진다. 또한 동아전람 홈페이지에 사전등록을 하면 무료 관람 초청장을 보내준다.

〈전시회 개요〉

· 기간 : 2008년 1월23일(수)~1월27일(일) (5일간)

· 장소 : SETEC 1,2,3전시관, 로비, 옥외전시장

· 문의 : (주)동아전람 02-780-0366~7

오토데스크코리아 무료 교육 서비스 실시

2007년 10월 5일, 서울·세계적인 설계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회사의 한국법인인 (주)오토데스크코리아(대표남기환)는 오토데스크 서브스크립션 고객을 대상으로 2008년 1월까지 4개월간 전국 6개 권역에서 새로운 AutoCAD 2008 제품 및 인벤터, 레빗, 시빌 3D 등 주요 3D 솔루션에 대한 무상 교육 서비스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인천 및 충청·강원·경상·전라지역 등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전국에서 순회 실시되며, 향후 정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후에는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 문의 : 02-553-4696,

www.autodesk.co.kr

KCC발코니창호 손잡이 'WHITE' '굿 디자인(GD)' 상 수상



KCC (www.kccworld.co.kr)는 최근 발코니 창호 손잡이 신제품 'WHITE' 3개 품목이 '2007 우수산업디자인'전에서 '굿 디자인(GD)' 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GD 마크는 산업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자인 인증 제도로 기능과 품질, 사용 편의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해 우수한 디자인 제품에 부여된다.

이번에 GD 마크를 획득한 'WHITE' 제품은 레버식 대형 자동 손잡이, 크리스탈(잠금장치), 소형 수동 손잡이 등이다.

이들 제품은 손잡이는 부분의 면을 부드럽게 하고 홈을 주어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한편 각진 부분 없이 조약돌과 같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도록 둥글게 마무리하여 안전성을 강조하는 등 각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성스러운 곡선미와 밝고 화사한 색상

은 부드러운 메이플이나 밝은 파인 계열의 마감재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여성스럽고 내추럴한 공간에 안성맞춤이다.

KCC 관계자는 "레버식 대형 자동 손잡이 제품의 경우 화이트 색상 뿐 아니라 옵션으로 베이지, 그린 색상의 나뭇잎 패턴을 추가할 수 있다"면서 "최근 트렌드인 친환경 디자인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칼라몰타르 바닥재 'KCC 칼라콘' 출시



KCC(www.kccworld.co.kr)는 자연적인 패턴과 색상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고품격 친환경 바닥재 'KCC 칼라콘'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벽돌, 콘크리트 등의 민무늬 바닥시공에 따른 단조로운 실내외 환경에 시각적 즐거움과 경관미를 제공해 주는 무기계 칼라몰타르 바닥재이다.

'KCC 칼라콘'의 특징은 무엇보다 다양한 무늬 및 색상연출이 가능한 데다 시공이 간편하며 관리 및 유지도 수월하다는 점이다. 또한 내마모성과 방수성, 내오염성 등의 우수한 기능성은 물론 디자인과 친환경 요소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이 제품은 최근 도시 및 주택의 미관이나 경관을 중시하는 추세에 따라 '각종 보호용 바닥재(보행도로, 지하주차장 램프, 데코바닥 등)', '위락·스포츠 시설(공원 및 공동주택단지 광장, 산책로, 진입로, 테마파크, 쇼핑몰 등)', '각종 건축물 내·외벽(지하차도 옹벽, 방음벽, 지하도 벽면 등)'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KCC 관계자는 "최근 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시 미관이나 경관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KCC 칼라콘'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디자인 및 색상 개발과 친환경 제품 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080-022-8200(고객상담실)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88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30 · 광진구건축사회/448-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6 · 금천구건축사회/859-1586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3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3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8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8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중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3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8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오산시지역건축사회/(031)835-0545 · 파주시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포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8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6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광정미지역건축사회/(033)374-6476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3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시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시지역건축사회/(043)842-389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6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시지역건축사회/(041)656-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시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시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시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66-0017 · 계룡지역건축사회/(042)841-5725 · 청양지역건축사회/(041)942-58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시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6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시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시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시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6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시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시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6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2-9005 · 양산시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6666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64-7400 · 함안지역건축사회/(055)565-8567 · 창녕지역건축사회/(055)533-247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53-1010

건축법 일부 개정

(2007. 10. 17 공표/법률 제 8662호)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온돌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온돌시공 기준 등을 마련하며, 건축행정절차를 투명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의 정의(법 제2조제1항제19호 신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이라 정의함.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검사내용 및 임시사용승인의 요건(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에는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및 감리완료보고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공사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의 신고기간 연장(법 제27조제2항)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의 신고기간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

라.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기준(법 제56조 신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게 설치하도록 함.

마.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법 제60조의2

신설)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함.

바.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법 제63조 신설)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대지안의 공지·높이제한 등 일부 규정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에서 요구하는 화재안전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통합적용계획의 수립·시행(법 제64조 신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또는 공원의 설치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지정신청기관은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변경조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6.12.30,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 2007.1.3, 2007.10.17〉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계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저수조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 삭제 <1999.2.8>
8. 삭제 <1999.2.8>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의2.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

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지문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7. 삭제 <1999.2.8>
18. "관계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관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9.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14조 (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

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1. 허가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1. 자동차관련 시설군
2. 산업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8>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8>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8조제2항 내지 제10항·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4조·제46조 내지 제48조·제51조·제53조 내지 제55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8조 내지 제7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11.8, 2007.10.17>

[전문개정 1999.2.8]

제15조 (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0.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홍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1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2000.1.28, 2001.1.16, 2002.2.4, 2005.11.8>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9.2.8, 2005.11.8>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007.10.17>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1999.2.8, 2007.10.17>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5, 1997.8.28, 1999.2.8, 2002.12.30, 2005.11.8, 2006.9.27, 2007.1.3>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삭제 <1999.2.8>
3.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5.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완성검사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설치검사
7.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9. 「도로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2.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3.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4.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

동개시의 신고

⑤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9.2.8>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5.11.8>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9.2.8, 2007.10.17>

②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공사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⑥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9.2.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등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축시험회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⑨「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5.29, 2005.11.8>

[전문개정 1995.1.5]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0.1.28, 2005.11.8, 2007.10.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1.8>

제27조(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32조의2(공개공지등의 확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규모 휴식시설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9.2.8>

[제67조에서 이동 <2007.10.17>]

제36조(건축선의 지정)

①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개정 2007.10.17>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6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제60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제2조제1항 제19호의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6.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7.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지

[본조신설 2007.10.17]

제60조의2(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6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07.10.17]

제6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제6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정신청기관으로 본다.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⑨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0.17]

제6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6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제6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3. 제6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4. 제6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를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를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와 그 밖에 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제63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2조, 제47조, 제50조, 제51조 및 제53조

2. 「주택법」 제21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39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4조·제55조·제57조·제5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17]

제64조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공원의 설치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신청기관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제65조 (건축주 등의 의무)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6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및 소유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6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공사감리 등의 과정 및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이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제66조 (허가권자 등의 의무)

①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해당 모니터링보고서와 제6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제67조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76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6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6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종전 제67조는 제32조의2로 이동
(2007.10.17)]

제82조 (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1.5, 1999.2.8, 2007.10.17>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1995.1.5>
 4. 삭제 <1995.1.5>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의 제출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8.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9.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

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1.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2007. 11. 1. 제정/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456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조의4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한다.
2. "내구연한"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의 한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평면계획이나 설비 등을 변화하거나 다양화 할 수 있는 성능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성능을 통합한 개념을 의미한다.

4. "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 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 등을 위한 배선, 배관 등을 말한다.

제4조 (기본 원칙) 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은 반영구적인 장수명, 내구성, 안전성, 가변성, 친환경성 등의 성능과 품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향후 리모델링을 대비하고, 이 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내구연한 설정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사항
2.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를 말한다)의 보존
3. 리모델링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등을 기하고 자원의 절약 및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
4. 향후 리모델링시 발코니, 주차장 등 추가설치와 관련,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설계가 되도록 조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리모델링의 설

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 창의적 설계 및 시공법, 재료, 자재 등의 성능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물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을 말한다.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판단평가서(이하 "판단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주등에게 판단평가서에 대한 평가근거자료를 따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근거자료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등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제

출시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항목별의 검토 의견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 및 승인) 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② 건축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인정신청서와 판단평가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용적률 등에 대하여 완화가 가능하며, 허가권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 소위원회

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평가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건축주등이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주등이 보완요청을 2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 (허가사항 변경 등) 제6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승인받은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청·평가 및 승인 등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건축조례 제·개정 기본원칙)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비율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의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시·군·구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 세칙) 이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고>

[별지 제1호 서식]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신청서						
건축주등	개인인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법인인 경우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연락처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대지조건	위치					
	지역			지구		
	지목			면적		
규모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폐율	%	용적률	%		
완화적용내용	구분	법정 기준	완화적용 비율			
	용적률	%		%		
	건축물의 높이	m		m		
	임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m		m		
「건축법」 제5조의4 및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등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 : 제5조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

[별지 제2호 서식]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판단평가서						
■ 신청자 및 신청 대지						
① 건축주등 성명(상호)						
② 대지 위치						
■ 자체평가 결과						
③ 세대 가변성		구조 형식 :	(점)			
④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전용설비의 분리		(점)			
	공용설비의 분리		(점)			
⑤ 세대내부 가변성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 % (점)				
⑥ 친환경성		적합, 부적합				
⑦ 평점 합계		점 (③ + ④ + ⑤)				
■ 건축사 및 관계전문기술자						
⑧ 건축사	성명	(인)				
	자격번호			업무신고번호		
	사무소명					
	주소	(Tel:)				
⑨ 설비	기계	성명	(인)			
		사무소명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전기	성명	(인)			
		사무소명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⑩ 구조	성명	(인)				
	사무소명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소	(Tel:)				
	성명	(인)				
⑪ 기타	소방	사무소명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소	(Tel:)			
	정보통신	성명	(인)			
		사무소명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소	(Tel:)					

1. 세대 가변성 평가방법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1. 세대 가변성		가. 라멘구조	38~40
	① 구조형식	나. 무량판구조	33~37
		다. 혼합구조	28~30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① 전용설비의 분리	가. 배관과 배선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	18~20
		나. 배관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	13~17
	② 공용설비의 분리	가.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용공간 또는 주동외주부에 위치 + 예비 샤프트 설치	18~20
		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용공간 또는 주동외주부에 위치	13~17
		가.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10%미만	18~20
3. 세대 내부 가변성	①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나.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10%이상 40%미만	13~17
		다.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40%이상 70%미만	8~12
4. 친환경성	① 소음·진동·차음 에너지절약 실내환경질 등	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 이상 적용	필수

①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구조안전에 적합해야 한다.

② 라멘구조는 이중골조방식과 모멘트골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골조방식”이라 함은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골조방식을 말하고, “모멘트골조방식”이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라멘구조는 수평 또는 수직방향 세대간 통합이 가능해야 한다.

③ 무량판구조는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하중을 저항하는 구조이다. 혼합구조는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이다. 이 경우 무량판구조와 혼합구조는 수평 또는 수직방향 세대간 통합이 가능해야 한다.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평가방법

① 전용설비의 분리

가. 전용설비는 전용공간에서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갱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용배관과 배선이 공용공간에서 전용공간으로 인입할 때 수반되는 벽, 바닥, 기둥, 보 등의 부분을 국부적으로 관통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구조체 속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통부분에 슬리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아울러 이중배관·배선 등을 사용한 경우 구조체 속에 매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공용설비의 분리

가. 공용배관과 배선은 공용공간 또는 주동 외주부 등에 설치하고,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갱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용배관과 배선이 벽, 바닥, 기둥, 보 등을 국부적으로 관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 속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통부분에 슬리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아울러 이중배관·배선 등을 사용한 경우 구조체 속에 매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 “예비 샤프트 설치”란 향후의 공간 변화 등에 따라 배관 등이 추가로 설치 용이하도록 공용공간 또는 주동 외주부 등에 별도로 1개소 이상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이 경우에도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갱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세대내부 가변성 평가방법

①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산정식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길이 × 100 / 세대내부 전체벽 및 기둥길이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라 함은 세대내부의 내력벽 및 기둥의 장변의 길이를 말함

4. 친환경성

소음·진동·차음 「에너지절약」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친환경적 성능, 품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4조 제3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등과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 되어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으로 본다.

2007년 건축허가 현황(9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누계		
		2006년	2007년	증가율	2006년	2007년	증가율
계	동 수	17,315	16,095	-7.0%	136,643	165,612	21.2%
	연면적	11,108,835	8,430,729	-24.1%	100,080,815	91,058,294	-9.0%
주거용	동 수	5,654	5,331	-5.7%	38,650	53,516	38.5%
	연면적	5,466,604	3,112,792	-43.1%	40,267,601	31,854,756	-20.9%
상업용	동 수	5,165	4,978	-3.6%	41,381	53,141	28.4%
	연면적	2,222,017	2,296,816	3.4%	24,532,217	25,073,237	2.2%
공업용	동 수	1,970	1,618	-17.9%	20,330	17,827	-12.3%
	연면적	1,155,590	977,544	-15.4%	12,585,078	12,191,232	-3.1%
교육및 사회용	동 수	1,069	978	-8.5%	9,063	9,843	8.6%
	연면적	660,569	679,242	2.8%	8,764,075	9,731,216	11.0%
기 타	동 수	3,457	3,190	-7.7%	27,219	31,285	14.9%
	연면적	1,604,055	1,364,335	-14.9%	13,931,844	12,207,853	-12.4%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누계		
		2006년	2007년	증가율	2006년	2007년	증가율
계	동 수	17,315	16,095	-7.0%	136,643	165,612	21.2%
	연면적	11,108,835	8,430,729	-24.1%	77,373,080	91,058,294	17.7%
철 근 철골조	동 수	14,151	13,497	-4.6%	118,348	138,716	17.2%
	연면적	10,865,392	8,221,357	-24.3%	98,534,098	88,688,361	-10.0%
조적조	동 수	2,439	1,843	-24.4%	14,608	19,162	31.2%
	연면적	179,622	151,030	-15.9%	1,158,469	1,676,644	44.7%
목 조	동 수	631	620	-1.7%	3,502	6,491	85.4%
	연면적	50,251	49,920	-0.7%	307,552	534,508	73.8%
기 타	동 수	94	135	0.0%	185	1,243	0.0%
	연면적	13,570	8,422	0.0%	80,696	158,781	0.0%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누계		
		2006년	2007년	증가율	2006년	2007년	증가율
계	동 수	17,315	16,095	-7.0%	136,643	165,612	21.2%
	연면적	11,108,835	8,430,729	-24.1%	100,080,815	91,058,294	-9.0%
수도권	동 수	5,343	5,699	6.7%	44,895	56,683	26.3%
	연면적	4,078,604	4,138,884	1.5%	41,398,623	41,760,769	0.9%
서울	동 수	927	896	-3.3%	7,729	9,657	24.9%
	연면적	775,122	1,237,935	59.7%	11,003,707	10,098,941	-8.2%
인천	동 수	493	549	11.4%	3,449	5,348	55.1%
	연면적	725,949	285,211	-60.7%	3,645,181	5,768,180	58.2%
경기	동 수	3,923	4,254	8.4%	33,717	41,678	23.6%
	연면적	2,577,533	2,615,737	1.5%	26,749,735	25,893,647	-3.2%
지방	동 수	11,972	10,396	-13.2%	91,748	108,929	18.7%
	연면적	7,030,231	4,291,845	-39.0%	58,682,192	49,297,526	-16.0%
부산	동 수	411	395	-3.9%	4,663	4,660	-0.1%
	연면적	230,584	231,355	0.3%	8,219,048	3,413,390	-58.5%
대구	동 수	622	313	-49.7%	4,566	4,716	3.3%
	연면적	792,282	156,848	-80.2%	5,223,478	3,949,891	-24.4%
광주	동 수	364	353	-3.0%	3,409	3,398	-0.3%
	연면적	217,509	334,162	53.6%	3,058,895	2,500,553	-18.3%
대전	동 수	324	196	-39.5%	2,889	2,666	-7.7%
	연면적	370,635	76,434	-79.4%	2,284,477	1,545,937	-32.3%
울산	동 수	370	574	55.1%	3,553	5,482	54.3%
	연면적	202,739	266,688	31.5%	2,032,098	3,139,944	54.5%
강원	동 수	1,130	842	-25.5%	7,611	9,336	22.7%
	연면적	348,031	226,178	-35.0%	3,752,454	3,760,790	0.2%
충북	동 수	1,116	935	-16.2%	8,065	9,642	19.6%
	연면적	262,426	406,573	54.9%	4,212,659	4,072,359	-3.3%
충남	동 수	1,481	1,247	-15.8%	9,813	12,674	29.2%
	연면적	1,550,550	435,722	-71.9%	6,777,272	5,918,016	-12.7%
전북	동 수	1,132	1,182	4.4%	8,162	9,637	18.1%
	연면적	432,673	423,987	-2.0%	3,077,182	3,449,208	12.1%
전남	동 수	1,257	1,183	-5.9%	9,316	10,944	17.5%
	연면적	326,649	250,669	-23.3%	3,694,688	3,288,042	-11.0%
경북	동 수	1,807	1,573	-12.9%	14,234	17,241	21.1%
	연면적	540,700	837,619	54.9%	6,313,375	5,806,548	-8.0%
경남	동 수	1,699	1,433	-15.7%	12,706	15,948	25.5%
	연면적	1,646,745	615,359	-62.6%	9,199,263	7,513,995	-18.3%
제주	동 수	259	170	-34.4%	2,761	2,585	-6.4%
	연면적	108,708	30,251	-72.2%	837,303	938,852	12.1%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7년 9월말

구 분 건 축 사 회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 역 사무소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167	5,167	133	266	17	53	5,317	5,486	1,556	1,556	290	580	67	201	24	96	32	228	1,969	2,661		7	7,286	8,147	100.0%	100.0%
서울	1,105	1,105	37	74	8	25	1,150	1,204	874	874	184	368	42	126	12	48	20	141	1,132	1,557		6	2,282	2,761	31.3%	33.9%
부산	478	478	16	32	3	9	457	519	91	91	18	36	4	12	3	12	3	19	119	170			616	689	8.5%	7.9%
대구	416	416	24	48	6	19	446	483	64	64	17	34	6	24	0	0	2	11	91	133			537	616	7.5%	7.7%
인천	240	240	2	4	0	0	242	244	47	47	10	20	0	0	0	0	0	0	57	67			299	311	4.0%	3.8%
광주	215	215	1	2	0	0	216	217	35	35	6	12	1	3	2	8	3	21	47	79			263	296	3.6%	3.7%
대전	200	200	13	26	0	0	213	226	30	30	9	18	3	9	0	0	2	20	43	77			257	303	3.5%	3.7%
울산	169	169	8	16	0	0	177	185	16	16	3	6	1	3	0	0	0	0	20	25			197	210	2.7%	2.8%
경기	690	690	5	10	0	0	695	700	216	216	22	44	2	6	1	4	0	0	241	270			936	970	13.0%	12.2%
강원	166	166	2	4	0	0	168	170	20	20	3	6	0	0	0	0	1	5	24	31			192	201	2.6%	2.8%
충북	180	180	5	10	0	0	185	190	27	27	4	8	1	3	2	8	1	11	35	57			220	247	2.9%	3.0%
충남	181	181	3	6	0	0	184	187	38	38	4	8	1	3	3	12	0	0	46	61			230	248	3.0%	3.1%
전북	201	201	3	6	0	0	204	207	26	26	1	2	2	6	1	4	0	0	30	38			234	245	3.2%	3.0%
전남	141	141	0	0	0	0	141	141	9	9	1	2	0	0	0	0	0	0	10	11			151	152	2.2%	1.9%
경북	322	322	6	12	0	0	328	334	28	28	3	6	1	3	0	0	0	0	32	37		1	360	371	5.0%	4.6%
경남	369	369	8	16	0	0	367	375	26	26	5	10	1	3	0	0	0	0	32	39			399	414	5.5%	5.0%
제주	104	104	0	0	0	0	104	104	9	9	0	0	0	0	0	0	0	0	9	9			113	113	1.5%	1.3%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건축사회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147	10	8,157	100.0%	23
서울	2,761	3	2,764	33.9%	10
부산	689	1	690	7.9%	9
대구	616	0	616	7.7%	0
인천	311	0	311	3.8%	0
광주	296	0	296	3.7%	0
대전	303	1	304	3.7%	0
울산	210	0	210	2.6%	0
경기	970	2	972	12.2%	2
강원	201	0	201	2.6%	0
충북	247	0	247	3.0%	0
충남	248	3	251	3.1%	0
전북	245	0	245	3.0%	0
전남	152	0	152	1.9%	0
경북	371	0	371	4.6%	1
경남	414	0	414	5.0%	1
제주	113	0	113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입미처리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505	2,667	88	8,260	
비 율	66.65%	32.29%	1.06%	100%	
사무소수	5,336	1,976	-	7,312	
비 율	72.98%	27.02%	-	100%	

Architectural Record

THE ARCHITECTURAL RECORD



2007년 8월호는 공학에 의거하는 디자인들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모포시스의 U.S. Federal building, Murphy/Jahn의 Suvarnabhumi 공항, Ingenhoven Architects의 루프트한자 항공 센터, agps architecture의 포틀랜드 케 이블가 정부소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건축사와 공학자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정리한 Nina Pappaport의 에세이이다.

■ Books

종종 Record 지의 주제 선정은 근간 서적에 대한 촘촘한 검색과 내용의 네트워킹에

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번 호도 역시 주제에 맞춰 건축사와 엔지니어들의 결합이 만들어 내는 마법의 순간들을 보여주는 저작들을 소개하고 있다.

• Building : 3,000 Years of Desig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By Bill Addis NY:Phaidon, 2007

• Ove Arup : Masterbuilder of Twentieth Century by Peter Jones, New Haven : Yale univ. press, 2006

• Materials for Design by Victoria Bell with Patrick Rand.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6

• Liquid Stone : New Architecture in Concrete edited by Jean Louis Cohen and G. Martin Moeller, Jr.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6

• Failed Stone : Problems and Solutions with Concrete and Masonry by Patrick Loughran Basel : Birkhauser, 2006

■ project

Suvarnabhumi 공항 터미널

(태국, 방콕/ 건축사: Murphy/Jahn / 엔지니어: Werner Sobek, Matthias Schuler)

이 공항 터미널은 중앙부에 파빌리온이 있고, 그 위에 거대한 캔틸레버 형태의 캐노피와 장대한 튜브모양의 콘코스가 위치하고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중앙 파빌리온 앞에는 한쌍의 주차 시설이 되어있는데 콘코스의 상부는 유리 와 트러스, 막구조로 되어 있다. 콘코스는 항공기로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건물은 은색-회색 계열의 모노크롬적 요소와 코발트 블루의 강렬한 대비를 통해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부 파빌리온 근처의 기하학적 요소의 원뿔과 수로와 잔디와 산책로를 가지고 있는 Geometric garden은 항공기에서 내리거나 항공기로 향하는 사람들이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배치가되어 있으며 장대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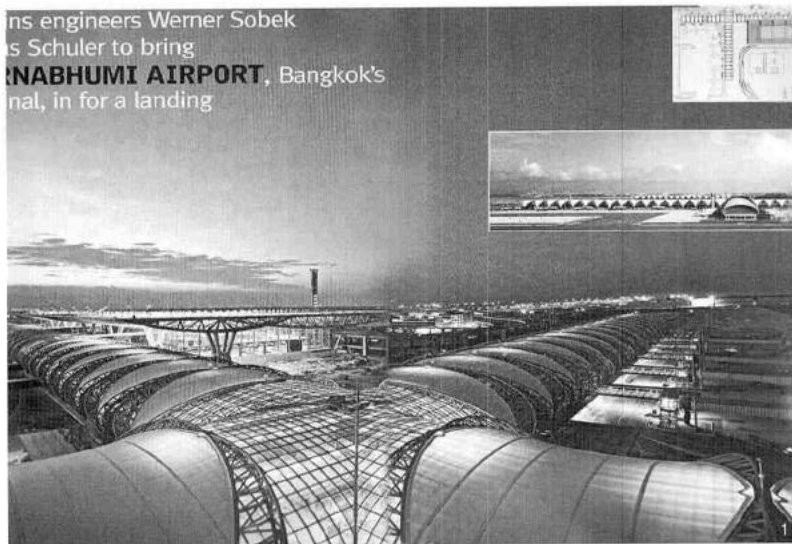
축물에 숨겨져 있는 작은 위트이기도 하다. 중앙 통로에서 중앙 파빌리온은 그것이 취하고 있는 구조적 미학을 잔뜩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엄청난 투명성과 케이블로 매단 파사드의 역할이 크다. 천정 캐노피는 최대한의 태양광을 내부로 유입시키도록 고안되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내부 구조를 반짝거리도록 만들고 있다. 이 건축물은 좀 더 큰 스케일에서 현재 공항터미널이 고민하고 있는 기능적 한계들과 미학적 가치들에 도전하고 있다. 이는 다시 건축이 국가적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엔지니어링의 협업이 대단히 유용한 방식임을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Lufthansa Aviation Center
(항공사 건물/ 독일, 프랑크푸르트 / 건축사: Ingenhoven Architects/ 엔지니어: Werner Sobek and Klaus Daniels)

건물의 투명성을 제고할 때 가장 고민거리는 어떻게 열손실과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한 것이다. 넓은 판유리와 경콘크리트 패널은 항공과 관련된 가벼움의 감각을 제공하긴 하지만 이로 인한 에너지 효율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를 위해 건축사와 엔지니어는 여러가지 고안들을 하고 있다. 오피스 쪽에는 삼중 판유리를 설치하여 공항 주변의 소음을 막는 동시에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손실되는 효과도 낮출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내부는 10개의 배리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배리 사이사이에는 조경이 되어 있는 유리정원 형태의 아트리움이 위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부와 격리된 내부라는 인식을 경감시켜며 동시에 내부 환경의 개선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원형태의 아트리움의 기능은 거기에만 멈추지 않는다. 이 정원은 내 외부의 공기 순환과 정화, 배기를 촉발시키는 유기적 장치이며 이를 통해 건물 내부는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 건축물은 기술지향적 독일의 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두가지 모순-거대함과 친환경적일 것, 투명성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결합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1. suvarnabhumi airport
2, 3, 4. lufthansa aviation center



Engineers Werner Sobek and Klaus Schuler to bring **SUVARNABHUMI AIRPORT**, Bangkok's new terminal, in for a landing



Christoph **Ingenhoven** with engineers Werner Sobek and Klaus Daniels devise a crystalline, energy-efficient workplace for **LUFTHANSA AVIATION CENTER** in Frankfurt



Portland Aerial Tram

(케이블카 정류장/ 오레곤/ 건축사: agps architecture/ 엔지니어 : Arup)

케이블카는 오레곤 Health and Science University의 언덕 부분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신축 의대 캠퍼스를 연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단순히 멀리 떨어진 두 캠퍼스를 연결하는 기능 이외에 이 케이블카와 그에

달린 시설들은 언덕 아래의 고밀도/ 복합용도의 근린을 상징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고 있으며, 언덕으로 인해 분리된 도시적 정서들을 연계하여 하나의 주요한 랜드마크가 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남산 케이블카와 기능과 상징성이 유사함에도 이 케이블카 시설이 새로워 보이는 것은 이 시설들이 교묘하게 조각적이면서도 기술적 과시는 숨기는 노련한 태도에 기인한다. 형태가 기능을 따르

는 디자인이라는 기치를 충분히 따르면서도 이 건축물은 일반적인 공장이나 기계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놓치기 쉬운 기계미학과 흥미로운 형태의 안정된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는데에서 놓치기 힘든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글/김훈/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선문대학교 계약직 교원, 부천대학교 출강) 圖

portland aerial

